

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4년제 대학교와 정부출연(연)을 대상으로 연구윤리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정부가 국내의 연구윤리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2년 실태조사에서는 237개의 대학과 32개의 정부출연(연)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대학의 81.4%와 정부출연(연)의 90.6%가 응답을 하였다. 실태조사는 온라인 상에서 수행되었으며 설문기간은 2012년 8월23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70일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의 항목으로는 연구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및 연구윤리 관련 부서의 설치 유무와 설치시기, 관련 위원회 경비, 연구윤리 규정, 연구노트관리 지침의 제정, 논문 대필 관련 규정 여부, 연구부정행위처리 처리 횟수 및 유형,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제출 여부 등)이 포함되었으며 그 결과는 이전의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금번의 2012년도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에서는 일반연구자인 교수, 연구원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지침의 인지 여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 인지 여부,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목격했는지 여부, 연구윤리 교육의 이수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2012년의 실태 조사결과 이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연구윤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연구윤리 지침의 제정, 연구노트 규정, 위원회 설치, 교육의 실시 등)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이 낮았다 (대학의 경우 63.7%, 정부출연(연)의 경우는 86.2%). 따라서 대학과 정부출연(연) 그리고 정부 모두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구윤리교육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IRB의 설치비율이 여전히 낮으므로 각 연구기관들이 IRB 설치를 통해 생명과학분야의 안전과 생명윤리를 확보하고 인문사회분야에서도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 연구자의 경우 비교적 연구윤리지침의 존재 (55.6% 인지)와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연구자의 21.1%가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유형은 표절, 중복게제,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가 비슷한 비율로 높았다.

S U M M A R 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and analyze the activities of research ethics in universities and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of Korea. In addition, this research has focused on the generation of valuable information for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policy and system for boosting up research ethics according to global standards. The objects of this survey were 237 universities and 32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The rates of data collection in universities and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were 81.4% 90.6%, respectively. In the present work, professors, researchers and graduate students were involved in the survey for the first time. The present survey was carried out through a on-line questionnaire system from August 23 to October 31. The questions contained in the survey were the compilation of charter (the code) or the regulation on research ethics and research notes, the presence of department charging of research ethics affairs, actual research misconduct results and a spreading plan of research ethics education etc. In comparison to the results of 2010 survey, the number of universities and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have been greatly increased as the active members carrying out a variety of research ethics activities in the areas of establishment of regulation and codes on research ethics and research note, organizing research ethics committee, and executing education on research ethics. However, still low percentages of universities and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63.7% and 86.2%, respectively) have run education programs in research ethics. Therefore, the effort to spread out the research ethics education programs in the form of on-line or off-line should be increased in every sides of universities and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 In addition,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should be set up in much more universities in order to not only guarantee bio-related ethics and security in biotechnology but also guarantee human right in human and social sciences. Professors, researchers and graduate students are well beware of regulation and codes on research ethics, and 21.1% of surveyed persons have done research misconducts and the type of research misconducts were mostly plagiarism, mistake in authorship, and duplication of research results.

표 목 차

〈표 3-1〉 설문 조사 대상수 및 응답률	11
〈표 3-2〉 설문조사에 응한 대학	12
〈표 3-3〉 설문조사에 응한 정부출연(연)	21
〈표 3-4〉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의 제정 여부	22
〈표 3-5〉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을 제정한 대학의 목록	22
〈표 3-6〉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을 제정한 정부출연(연)의 목록	23
〈표 3-7〉 시기별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의 제정 시기	24
〈표 3-8〉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의 개정 여부	25
〈표 3-9〉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을 개정한 기관의 목록	25
〈표 3-10〉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의 제정 필요성 여부	26
〈표 3-11〉 연구노트 규정의 제정 여부	28
〈표 3-12〉 연구노트 규정·지침을 제정한 대학의 목록	28
〈표 3-13〉 연구노트 규정·지침을 제정한 정부출연(연)의 목록	28
〈표 3-14〉 연구노트 규정·지침의 제정 시기	29
〈표 3-15〉 연구노트 규정·지침의 제정 필요성 여부	29
〈표 3-16〉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설치 유형	31
〈표 3-17〉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설치 유형	31
〈표 3-18〉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설치 유형	31
〈표 3-19〉 연구윤리관련 위원회의 설치시기	33
〈표 3-20〉 연구윤리 진실성 위원회의 구성 형태	34
〈표 3-21〉 연구윤리 진실성 위원회의 기능	33
〈표 3-22〉 연구윤리 진실성 위원회의 개최 주기	34
〈표 3-23〉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개최 횟수	34
〈표 3-24〉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개최 횟수	35
〈표 3-25〉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설치시기	37
〈표 3-26〉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구성 형태	35
〈표 3-27〉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기능	36
〈표 3-28〉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개최 주기	37
〈표 3-29〉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개최 횟수	37
〈표 3-30〉 정부출연(연)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개최 횟수	37
〈표 3-31〉 연구윤리관련 위원회 미설치 기관의 설치의 필요성 여부	39
〈표 3-32〉 연구윤리관련 미설치 기관의 경우 향후 설치의 유형	39
〈표 3-33〉 연구윤리 관련 부서 설치 여부	39
〈표 3-34〉 연구윤리 관련 부서 설치 시기	40
〈표 3-35〉 연구윤리 관련 부서의 구성 인원	41

<표 3-36> 연구윤리 관련 담당자의 업무분장	41
<표 3-37> 연구윤리 관련 부서의 설치 단위	41
<표 3-38> 연구윤리 관련 부서 미설치 대학의 설치 필요성 여부	42
<표 3-39>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처리 횟수	42
<표 3-40> 정부출연(연)의 연구부정행위 처리 횟수	42
<표 3-41>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종류	42
<표 3-42> 정부출연(연)의 연구부정행위 종류	42
<표 3-43> 대학에서 연구부정행위 판정시 제재의 형태	43
<표 3-44> 정부출연(연)에서 연구부정행위 판정시 제재의 형태	43
<표 3-45> 논문 대필시 지도 교수 처벌 규정이 있는지 여부	45
<표 3-46> 논문 대필시 지도 교수를 처벌할 관련 규정의 신설의 필요성	45
<표 3-47> 교수 1인당 지도 학생 수에 대한 규정의 여부	46
<표 3-48> 교수 1인당 지도 학생 수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 여부	47
<표 3-49> 연구 부정행위 신고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여부	48
<표 3-50> 연구 부정행위 신고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필요성 여부	48
<표 3-51> 연구 부정행위 처리과정의 어려움	49
<표 3-52> 연구윤리 관련 교육 실시 여부	50
<표 3-53> 연구윤리 관련 교육 실시 시점	51
<표 3-54> 대학에서의 연구윤리 교육 대상	53
<표 3-55> 정부출연(연)에서의 연구윤리 교육 대상	54
<표 3-56> 연구윤리 교육의 형태	54
<표 3-57> 연구윤리 교육 담당자	55
<표 3-58> 연구윤리 관련 교육 미실시 이유	56
<표 3-59> 연구윤리 관련 교육 실시의 필요성	56
<표 3-60> 연구윤리 준수 확인 제출 요구 여부 및 필요성 여부	56
<표 3-61> 연구윤리 활동 경비의 유무	58
<표 3-62> 대학의 연구윤리 활동 경비 예산	58
<표 3-63>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활동 경비 예산	58
<표 3-64> 연구윤리 활동 경비 예산 지원처	59
<표 3-65> 대학의 연구윤리 활동에 대한 자체 만족도	60
<표 3-66>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활동에 대한 자체 만족도	60
<표 3-67> 정부의 연구윤리 확립 노력에 대한 평가-대학	61
<표 3-68> 정부의 연구윤리 확립 노력에 대한 평가-출연(연)	61
<표 3-69> 정부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해야 할 분야-대학	62
<표 3-70> 정부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해야 할 분야-출연(연)	62
<표 3-71> 일반 연구자 신분	63
<표 3-72> 일반연구자 응답자 전공 분야	64

<표 3-73>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존재 인식 여부	67
<표 3-74> 응답자 신분별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존재 인식 여부	67
<표 3-75> 위조와 변조에 관한 정의 인지 여부	68
<표 3-76> 응답자 신분별 위조와 변조에 관한 정의 인지 여부	69
<표 3-77> 표절에 관한 정의 인지 여부	70
<표 3-78> 응답자 신분별 표절에 관한 정의 인지 여부	72
<표 3-79> 부당한 논문저자에 관한 정의 인지 여부	73
<표 3-80> 응답자 신분별 부당한 논문저자에 관한 정의 인지 여부	76
<표 3-81> 중복사용에 관한 정의 인지 여부	77
<표 3-82> 응답자 신분별 중복사용에 관한 정의 인지 여부	79
<표 3-83> 연구윤리 전담 부서 및 인력 필요성 여부	80
<표 3-84> 연구윤리 상담지원 및 코디네이터에 관한 정의 인지	81
<표 3-85> 연구노트 지침의 존재에 관한 인식 여부	84
<표 3-86> 연구노트 직접 작성 혹은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여부	87
<표 3-87>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에 관한 인지 여부	87
<표 3-88> IRB 심의 여부	89
<표 3-89>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이유	92
<표 3-90> 연구부정행위 경험 혹은 목적 여부	93
<표 3-91> 응답자 신분별 연구부정행위 경험 혹은 목적 여부	94
<표 3-92> 연구부정행위 종류	95
<표 3-93> 응답자 신분별 연구부정행위	96
<표 3-9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의 종류	97
<표 3-95> 응답자 신분별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의 종류	100
<표 3-96>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 방법 인지 여부	101
<표 3-97>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 홈페이지 개설 필요성 여부	101
<표 3-98>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적은 이유	102
<표 3-99> 연구윤리 관련 교육 필요성 여부	103
<표 3-100> 응답자 신분별 연구윤리 관련 교육 필요성 여부	108
<표 3-101>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109
<표 3-102> 응답자 신분별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110
<표 3-103> 최근 3년간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받은 횟수	110
<표 3-104> 이수한 연구윤리 관련 교육의 형태	112
<표 3-105> 이수한 연구윤리 관련 교육의 내용	112
<표 3-106> 연구윤리 관련 교육에 대한 만족도	113
<표 3-107> 응답자 신분별 연구윤리 관련 교육에 대한 만족도	113
<표 3-108> 연구윤리 관련 교육에 대한 만족도	113
<표 3-109> 연구윤리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	114

<표 3-110> 연구윤리 교육의 필수화 필요성	114
<표 3-111> 연구윤리 교육 필수화의 시기	114
<표 3-112> 연구윤리 교육 필수화의 적절한 방법	115
<표 3-113> 연구윤리 교육 불필요 사유	115
<표 3-114>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 필요성 여부	115
<표 3-115> 연구윤리정보센터 인지 여부	116
<표 3-116> 응답자 신분별 연구윤리정보센터 인지 여부	116
<표 3-117> 연구윤리정보센터 이용 경험	116
<표 3-118>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	117
<표 3-119> 연구윤리정보센터가 보충해야 할 서비스 분야	117
<표 3-120> 정부의 연구윤리 확립활동에 대한 평가	118
<표 3-121> 정부의 연구윤리 확립활동 중 강화되어야 할 사항	118
<표 3-122> 국가적 연구윤리 정책조정기구의 설립에 대한 인식	118
<표 3-123> 국가적 연구윤리 정책조정기구의 주요기능	119
<표 3-124> 연구윤리 전담인력 양성 및 운용 지원 사업 필요성	119
<표 3-125> 연도별 응답률 현황	119
<표 3-126> 연도별 설문조사 기간	121
<표 3-127> 연도별 연구윤리관련 규정 및 지침 제정 현황	121
<표 3-128> 연도별 연구윤리관련 위원회 설치 현황	121
<표 3-129> 연도별 연구윤리 관련 부서 설치 현황	122
<표 3-130> 연도별 연구윤리 관련 교육 실시 현황	122

〈그림 목차〉

〈그림 3-1〉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 제정여부	31
〈그림 3-2〉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의 제정 시기	43
〈그림 3-3〉 연구노트 관련 규정·지침의 제정 시기	44
〈그림 3-4〉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설치 현황	52
〈그림 3-5〉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설치 현황	59
〈그림 3-6〉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설치시기	60
〈그림 3-7〉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구성 형태	61
〈그림 3-8〉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개최 주기	63
〈그림 3-9〉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개최 횟수	67
〈그림 3-10〉 IRB의 설치시기	68
〈그림 3-11〉 IRB 구성 형태	69
〈그림 3-12〉 대학에서의 IRB의 기능	70
〈그림 3-13〉 정부출연(연)에서의 IRB의 기능	71
〈그림 3-14〉 IRB의 개최주기	72
〈그림 3-15〉 IRB의 개최 횟수	73
〈그림 3-16〉 연구윤리관련 부서 설치 여부	74
〈그림 3-17〉 연구윤리 관련 부서 설치시기	74
〈그림 3-18〉 연구윤리 관련 부서의 구성 인원	75
〈그림 3-19〉 연구윤리 관련 부서의 업무분장	75
〈그림 3-20〉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처리 횟수	76
〈그림 3-21〉 정부출연(연)의 연구부정행위 처리 횟수	77
〈그림 3-22〉 처리한 연구부정행위 종류	78
〈그림 3-23〉 연구부정행위 판정시 제재의 형태	78
〈그림 3-24〉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 홈페이지 개설 여부	79
〈그림 3-25〉 연구윤리 관련 교육 실시 여부	80
〈그림 3-26〉 연구윤리 교육 시작 시점	81
〈그림 3-27〉 연구윤리 교육 형태	82
〈그림 3-28〉 연구윤리 활동 경비	82
〈그림 3-29〉 연구윤리 활동 경비 예산	83
〈그림 3-30〉 연구윤리 자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	83
〈그림 3-31〉 정부의 연구윤리 활동에 대한 평가	84
〈그림 3-32〉 대학 및 정부출연(연)에서 바라는 정부의 연구윤리 활동	85
〈그림 3-33〉 연구윤리 정보센터 홈페이지	85
〈그림 3-34〉 연도별 응답률 현황	86
〈그림 3-35〉 연도별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지침 제정 현황	86

〈그림 3-36〉 연도별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설치 현황	90
〈그림 3-37〉 연도별 연구윤리 관련 부서 설치 현황	90
〈그림 3-38〉 연도별 연구윤리 관련 교육 시행 현황	91

3. 연구윤리 활동 실태 및 인식도 조사 분석

3-1. 조사·분석을 위한 모델 설정 및 근거

- 국내 대학·정부출연(연) 등 연구기관 및 일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활동 실태 및 인식도를 조사·분석하고자 하였음.
- 특히 금번의 2012년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일반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활동 실태 및 인식도를 조사·분석하고자 하였음
- 이를 지난 2008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연구윤리활동 실태 및 인식도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고자 하였음.
- 현재 운영 중인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IRB, 실험동물윤리위원회 등)의 구성 여부와 추진 실적, 연구윤리 관련 제반 사항의 제정 여부와 내용, 연구윤리 교육활동, 연구 부정행위 발생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처리 건수 및 조치내용을 파악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연구기관의 자체 노력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하였음.
- 조사 분석을 통해 그동안 정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노력이 각 대학, 정부출연(연) 및 일반연구자의 연구윤리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 2007년 2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제정 이전에는 국내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았고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 제정 및 제도화 또한 매우 부족했으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제정 이후 두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음. 따라서 금번의 2012년 조사에서 그동안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수준과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그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그 동안 대학이나 학계에서 다양하게 진행하였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여러 노력들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의 애로사항과 새로운 정책 제안을 수집하고자 하였음.
- 최근 연구 부정행위 발생에 따른 조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데 연구 부정행위의 접수 과정에 있어서의 용이성이 연구 부정행위의 신속한 처리와 연구 부정행위 예방에 큰 역할을 하므로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접수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이에 따라 2012년도의 설문조사 내용은 과거의 결과와 비교 분석을 위해 이전 조사의 설문문항을 가능한 유지하고자 하였음. 즉 연구윤리 활동 전반(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및 연구윤리 관련 부서의 설치 유무와 설치시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의 제정 여부 및 제정 시기, 연구부정행위처리 처리 횟수 및 부정 행위 유형, 연구윤리 교육 실시 여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는 이전의 조사 문항을 유지하였음.
- 2011년 개정된 정부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각 기관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혹은 지침을 개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음.
- 금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일반연구자를 대상 조사에서는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연구부정행위를 직접 저질렀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 여부 및 만족도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고자 하였음.
- 대학, 정부출연(연), 일반연구자를 대상으로는 설문지는 부록1에 있는 바와 같음.

3-2. 대학 및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활동 실태 및 인식도 조사 분석 결과

- 조사 방법: 웹 설문 조사
- 조사 기간: 2012. 8. 23 ~ 2012. 10. 31.
- 조사 대상: 국내 4년제 대학(대학원 대학 포함) 237개와 정부출연(연) 32개
- 응답률: 대학 237개 중 193개(81.4%), 정부출연(연) 32개 중 29개(90.6%)

대학과 정부출연(연)에 대한 2012년의 연구윤리활동 실태조사의 응답률 81.4%와 90.6%는 이전의 2008년 조사의 응답률 52.9%와 80.6% 보다는 높지만 2010년의 응답률 90.7%와 97.6%에 비하면 다소 낮았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중심대학들이 설문에 응답을 하였다. 다만 정부출연(연)의 경우 조사대상이 2010년의 41개에서 32개로 축소되었음에도 29개 기관이 응답하고 3개 기관은 응답하지 않았다.

<표 3-1> 설문 조사 대상수 및 응답률

연도	대학		정부출연(연)	
	조사 대상 수	응답 수	조사	응답수

		(응답률)	대상 수	(응답률)
2012년	237개	193개 (81.4%)	32개	29개 (90.6%)

<표 3-2> 설문조사에 응한 대학

설문조사에 응한 대학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동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일대학교, 경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고려대학교, 고신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관동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국방대학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군산대학교, 그리스도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국대학교(서울), 동명대학교, 동방대학원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을지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신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한중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표 3-3> 설문조사에 응한 정부출연(연)

설문조사에 응한 정부출연(연)
고등과학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극지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

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무기명 정부출연연구소 5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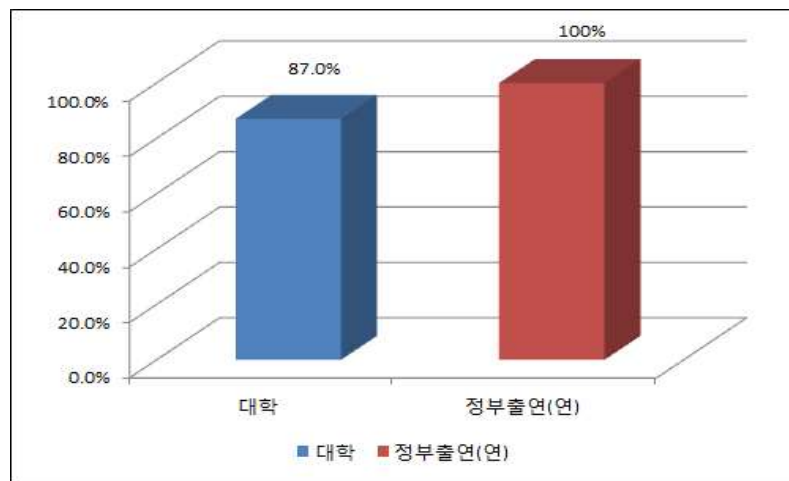
1)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

대학, 정부출연(연)이 연구윤리 관련 지침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응답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4>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 제정여부

대학		정부출연(연)	
응답 수	있음	응답 수	있음
193(100.0%)	168(87.0%)	29(100%)	29(100%)

<그림 3-1>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 제정여부



설문에 응답한 대학의 87.0%와 정부출연(연) 100%가 연구윤리 관련 규정 혹은 지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실태조사 결과를 이전의 2008년과 2010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대학의 경우는 연구윤리 관련 지침 보유 비율이 2008년 조사 71.3%, 2010년 조사 83.7%에서 금번의 2012년 조사에서는 87.0%로 그 비율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출연(연)은 조사에 응한 모든 기관의 응답률이 100%로 이전의 87.5%에서 증대되었다.

<표 3-5>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의 제정 대학 목록

연구윤리 관련 제반 규정·지침이 있는 대학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동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신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관동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국방대학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군산대학교, 그리스도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동명대학교, 동방대학원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원대학교, 전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을지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청주대학교, 충신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환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한중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연구윤리 관련 제반 규정·지침이 없는 대학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루터대학교,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초당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협성대학교

<표 3-6> 연구윤리 관련 제반 규정·지침이 있는 정부출연(연)

연구윤리 관련 제반 규정·지침이 있는 정부출연(연)
고등과학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극지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윤리 관련 제반 규정·지침이 없는 정부출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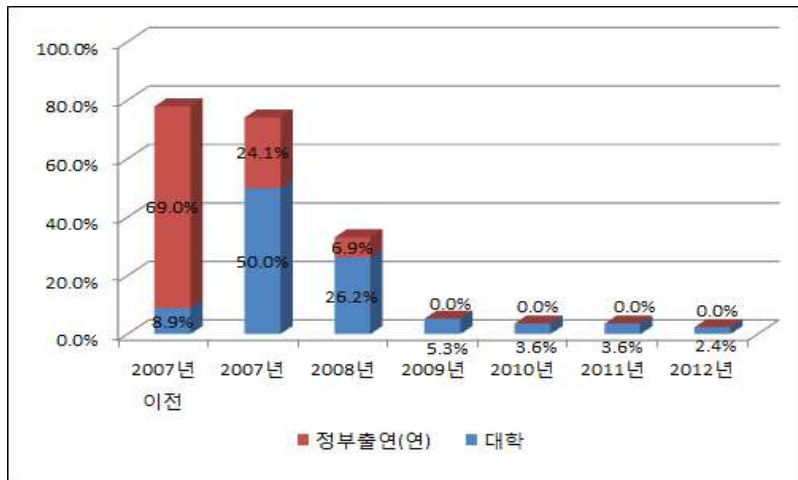
없음

1)-1.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의 제정 시기

<표 3-7>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의 제정 시기

제정시기	대학	정부출연(연)
2007년 이전	15(8.9%)	20(69.0%)
2007년	84(50.0%)	7(24.1%)
2008년	44(26.2%)	2(6.9%)
2009년	9(5.3%)	0(0.00%)
2010년	6(3.6%)	0(0.00%)
2011년	6(3.6%)	0(0.00%)
2012년	4(2.4%)	0(0.00%)
계	168(100.0%)	29(100.0%)

<그림 3-2>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의 제정 시기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을 제정한 시기를 보면, 대학의 경우는 2007년과 2008년에 가장 많이 제정이 되었고 정부출연(연)의 경우는 이들보다 빠른 2007년 이전과 2007년에 주로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의 개정 여부

<표 3-8>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의 개정 여부

대학		정부출연(연)	
응답 수	개정	응답 수	개정

168(100.0%)	34(20.2%)	29(100.0%)	8(27.6%)
-------------	-----------	------------	----------

정부는 2011년 6월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연구논문 작성 시 자신이 이전에 발표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사용하며, 이전 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하여 연구성과업적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둘째,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명시하기 위해 검증시효 기간 5년을 삭제하는 것과,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비율을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 이었다. 이러한 개정된 연구윤리지침을 반영하여 기관 자체의 규정 혹은 지침을 개정한 비율이 대학 20.2%와 정부출연(연) 27.6%로 기대보다 매우 낮았다. 대학의 경우 연세대학교와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KAIST,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은 지침을 개정하였으나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포항공대 등은 아직 지침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는 아직 많은 대학과 정부출연(연)이 개정된 연구윤리지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각 대학 및 정부출연(연)에 연구윤리지침의 개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표 3-9>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을 개정한 기관의 목록

연구윤리 관련 제반 규정·지침을 개정한 대학	
강남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일대학교, 국민대학교, 국방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대전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명지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세명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울산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연구윤리 관련 제반 규정·지침을 개정한 정부출연(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무기명3곳	

1)-3.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 제정의 필요성 여부

<표 3-10> 연구윤리 관련 규정 지침 제정의 필요성 여부

대학		정부출연(연)	
응답 수	필요성 있음	응답 수	필요성 있음
25(100.0%)	19(76.0%)	0(100.0%)	0(100.0%)

연구윤리 관련 제반 규정·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학에 대한 연구윤리 규정·지침의 제정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학의 76.0%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노트 관련 규정에 관한 조사

2)-1. 연구 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침의 마련 여부

<표 3-11> 연구노트 관련 규정 지침의 제정 여부

대학			정부출연(연)		
응답 수	있음	없음	응답 수	있음	없음
193(100.0%)	128(66.3%)	65(33.7%)	29(100.0%)	25(86.2%)	4(13.8%)

정부가 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 지침” (2007. 12)에 따라 연구 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침을 제정한 대학과 정부출연(연)의 비율이 66.3%와 86.2%로 이는 2010년의 제정 비율 49.3%와 62.5%에 비하여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연구노트 관련 규정 지침을 제정한 대학 목록

연구노트 관련 제반 규정·지침이 있는 대학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양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관동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원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을지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중대학교, 호남대학교, 홍익대학교
연구노트 관련 제반 규정·지침이 없는 대학
건동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동대학교, 계명대학교,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국방대학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구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그리스도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동방대학원대학교, 루터대학교, 배재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신문대학교,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세한대학교, 순복

음대학원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안양대학교, 영동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우송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충신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원대학교

<표 3-13> 연구노트 관련 규정 지침을 제정한 정부출연(연) 목록

연구노트 관련 제반 규정 · 지침이 있는 정부출연(연)
국가핵융합연구소, 극지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재료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무기명 4곳
연구노트 관련 제반 규정 · 지침이 없는 정부출연(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고등과학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무기명 연구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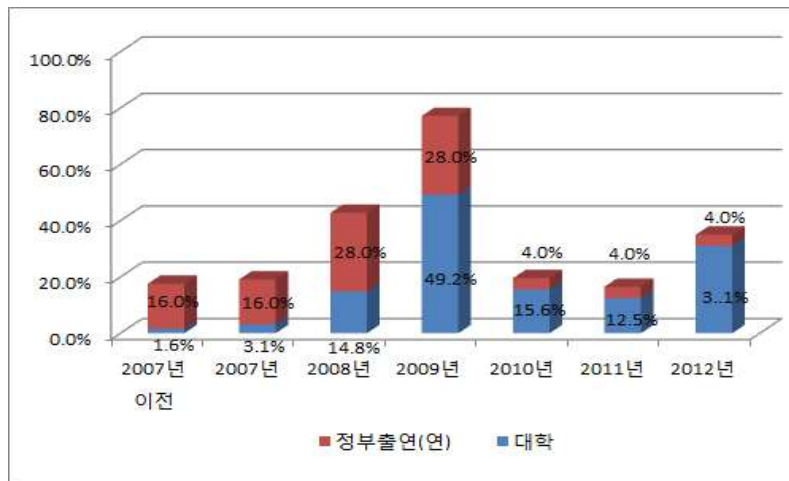
2)-2.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규정 · 지침 제정 시기

<표 3-14> 연구노트 관련 규정 지침의 제정 시기

제정시기	대학	정부출연(연)
2007년 이전	2(1.6%)	4(16.0%)
2007년	4(3.1%)	4(16.0%)
2008년	19(14.8%)	7(28.0%)
2009년	63(49.2%)	7(28.0%)
2010년	20(15.6%)	1(4.0%)
2011년	16(12.5%)	1(4.0%)
2012년	4(3.10%)	1(4.0%)
계	128(100.0%)	25(100.0%)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규정 · 지침 제정 시기는 대학의 경우 2009년 제정이 49.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2010년 15.6%, 2008년 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출연(연)의 경우는 2008년과 2009년의 제정비율이 28.0%로 동일하게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2007년 이전과 2007년이 16.0%로 높았다.

〈그림 3-3〉 연구노트 관련 규정·지침의 제정 시기



2)-3.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규정이나 지침의 필요성 여부

〈표 3-15〉 연구노트 관련 규정 지침의 제정 필요성 여부

대학			정부출연(연)		
응답 수	있음	없음	응답 수	있음	없음
65(100.0%)	34(52.3%)	31(47.7%)	4(100.0%)	3(75.0%)	1(25.0%)

연구노트 관련 제반 규정·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학과 정부출연(연)을 대상으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규정이나 지침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학과 정부출연(연)의 52.3%와 75.0%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에 대한 조사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란 연구의 윤리성을 제고하거나 심의하는 위원회로써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유형	기능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연구의 부정행위와 부적절한 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 담당
기관심의위원회 (IRB)	인문·사회과학분야, 의·생명분야 등 전 학문 분야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관심의위원회 <예,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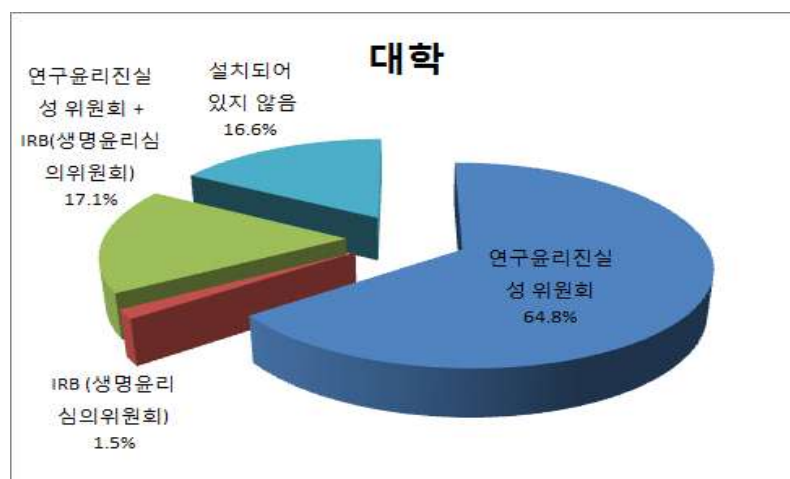
3)-1.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설치 유형

〈표 3-16〉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설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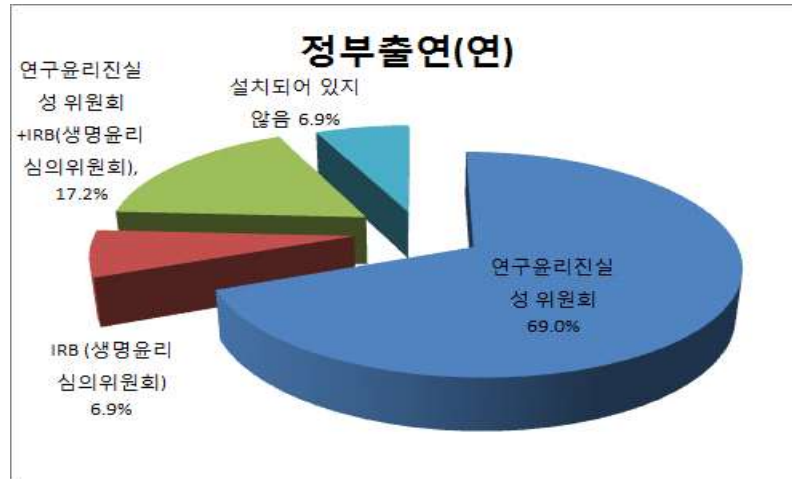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125 (64.8%)	20 (69.0%)
IRB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3 (1.5%)	2 (6.9%)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 IRB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33 (17.1%)	5 (17.2%)
설치되어 있지 않음	32 (16.6%)	2 (6.9%)
계	193 (100.0%)	29 (100.0%)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설치 유형을 조사한 결과 대학의 경우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만 설치된 경우가 6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IRB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곳이 17.1%로 나타났다. 정부출연(연)의 경우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만 설치된 경우가 69.0%로 가장 많았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IRB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곳은 17.2%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과 정부출연(연) 모두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에 비교하여 IRB의 설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비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설치 현황



〈그림 3-5〉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설치 현황



〈표 3-17〉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설치 유형

연구윤리 진실성 위원회
가야대학교, 강남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동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관동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대학교, 국민대학교, 국방대학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남부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 동명대학교, 동방대학원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원대학교, 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신학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청주대학교, 충신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북대학교, 팽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 한영신학대학교, 한중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IRB
고신대학교, 대전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IRB 모두 설치
가톨릭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아대학교, 삼육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예수대학교, 원광대학교, 을지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교

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가천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그리스도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전대학교, 동신대학교, 루터대학교,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초당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표 3-18>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설치 유형

연구윤리 진실성 위원회
고등과학원, 극지연구소, 재료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무기명 2곳
IRB
안전성평가연구소, 무기명 1곳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IRB 모두 설치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무기명 1곳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2.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설치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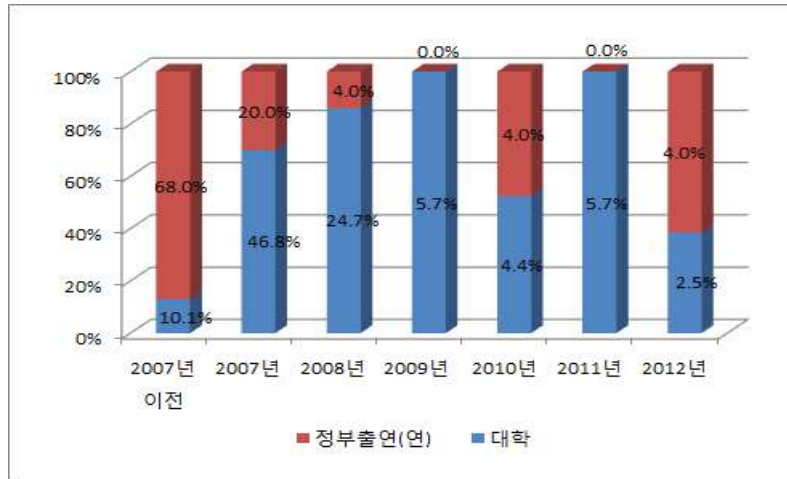
<표 3-19>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설치시기

	대학	정부출연(연)
2007년 이전	16 (10.1%)	17 (68.0%)
2007년	74 (46.8%)	5 (20.0%)
2008년	39 (24.7%)	1 (4.0%)
2009년	9 (5.7%)	0 (0.0%)
2010년	7 (4.4%)	1 (4.0%)
2011년	9 (5.7%)	0 (0.0%)
2012년	4 (2.5%)	1 (4.0%)
계	158 (100.0%)	25 (100.0%)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설치시기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의 경우는 2007년 제정비율이 4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2008년의 제정 비율 2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연)의 경우는 2007년의 제정비율이 6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2007년의 20.0%로 나타났다.

<그림 3-6>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설치시기



3)-3.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형태

<표 3-20>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의 구성형태

	대학	정부출연(연)
내부인사	110 (69.6%)	13 (52.0%)
내부인사+외부인사	41 (26.0%)	10 (40.0%)
기타	7 (4.4%)	2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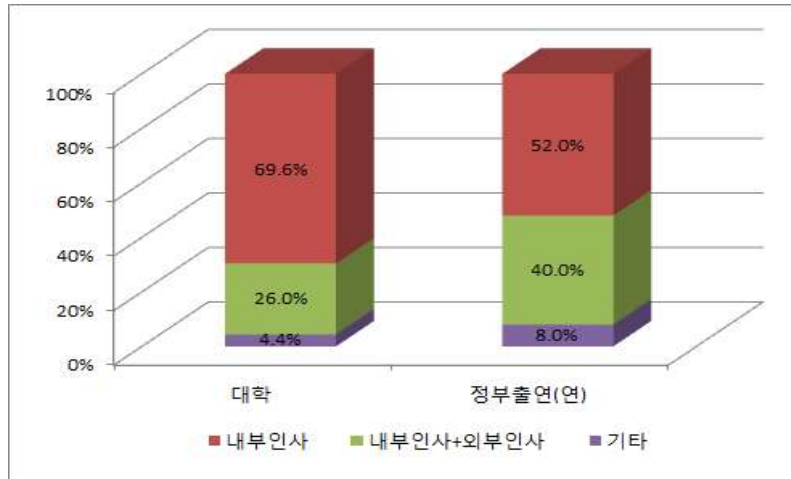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의 구성은 대학의 경우는 주로 내부인사로 이루어진 곳이 69.6%로 대부분이었고 내부인사와 외부인사의 비율은 26.0%로 낮았다. 반면에 정부출연(연)의 경우는 내부인사와 내부인사+외부인사의 비율이 52.0%와 40.0%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3)-4.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기능 (복수응답)

<표 3-21>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의 기능

기능	대학	정부출연(연)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	125 (35.3%)	19 (35.2%)
연구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	144 (40.8%)	25 (46.3%)
연구부정행위 사전 예방	81 (23.0%)	9 (16.7%)
기타	3 (0.9%)	1 (1.9%)

〈그림 3-7〉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구성 형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기능에 대한 조사결과 대학의 경우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을 위한 기능과 연구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대해 각각 35.3%와 40.8%로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연구부정행위 사전 예방은 23.0%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출연(연)의 경우도 대학과 마찬가지로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을 위한 기능과 연구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대해 각각 35.2%와 46.3%로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 사전 예방의 기능은 16.7%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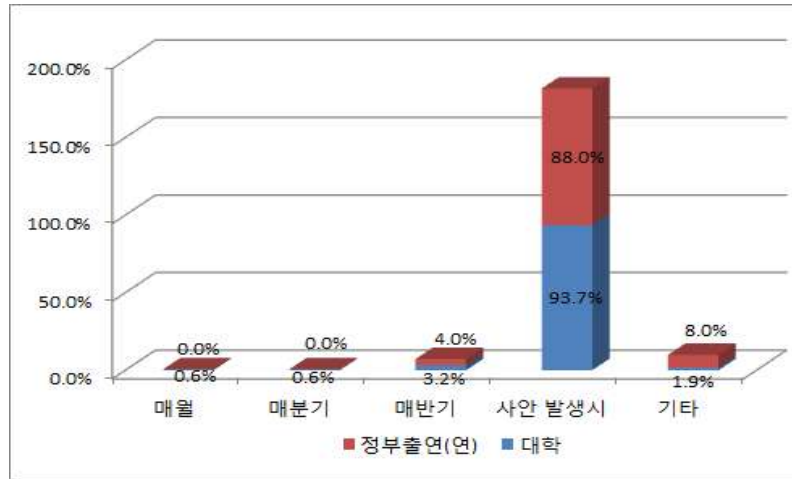
3)-5.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개최 주기

〈표 3-22〉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개최 주기

개최주기	대학	정부출연(연)
매월	1 (0.6%)	0 (0.0%)
매분기	1 (0.6%)	0 (0.0%)
매반기	5 (3.2%)	1 (4.0%)
사안 발생시	148 (93.7%)	22 (88.0%)
기타	3 (1.9%)	2 (8.0%)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개최 주기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 및 정부출연(연) 모두 사안 발생시에 위원회가 개최되는 비율이 93.7%와 88.0%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매반기 혹은 매분기 등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비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개최 주기



3)-6.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개최 횟수

〈표 3-23〉 대학의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개최 횟수

	없음	1 ~ 3 건	4 ~ 6건	7 ~ 9 건	10건 이상
2007년 이전	151(95.6%)	4(2.5%)	1(0.6%)	1(0.6%)	1(0.6%)
2007년	127(80.4%)	23(14.6%)	5(3.2%)	0(0.0%)	3(1.9%)
2008년	112(70.9%)	36(22.8%)	6(3.8%)	2(1.3%)	2(1.3%)
2009년	109(69.0%)	35(25.1%)	8(5.1%)	3(1.9%)	3(1.9%)
2010년	108(68.4%)	34(21.5%)	11(7.0%)	3(1.9%)	2(1.3%)
2011년	98(62.0%)	42(26.6%)	12(7.6%)	4(2.5%)	2(1.3%)
2012년	110(69.6%)	35(22.2%)	10(6.3%)	3(1.9%)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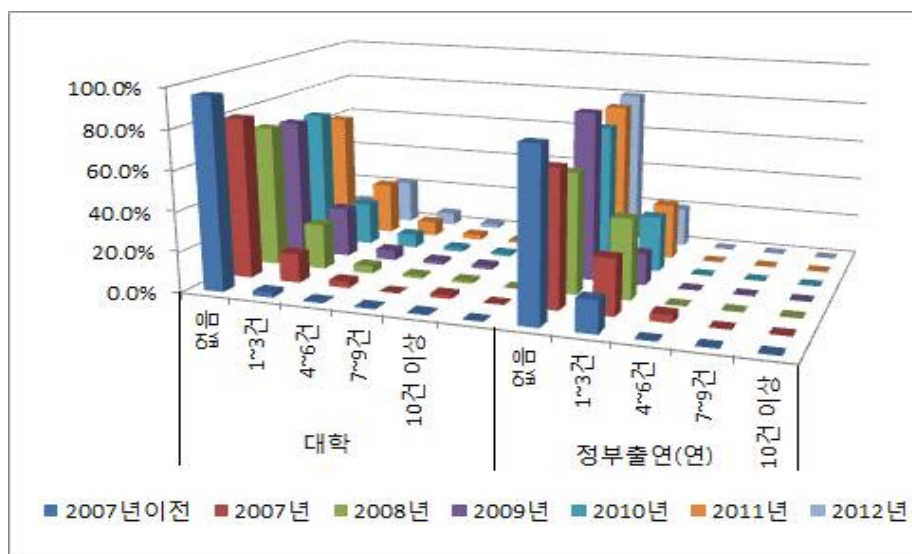
〈표 3-24〉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개최 횟수

	없음	1 ~ 3 건	4 ~ 6건	7 ~ 9 건	10건 이상
2007년 이전	21(84.0%)	4(16.0%)	0(0.0%)	0(0.0%)	0(0.0%)
2007년	17(68.0%)	7(28.0%)	1(4.0%)	0(0.0%)	0(0.0%)
2008년	15(60.0%)	10(40.0%)	0(0.0%)	0(0.0%)	0(0.0%)
2009년	21(84.0%)	4(16.0%)	0(0.0%)	0(0.0%)	0(0.0%)
2010년	18(72.0%)	7(28.0%)	0(0.0%)	0(0.0%)	0(0.0%)
2011년	18(72.0)	7(28.0%)	0(0.0%)	0(0.0%)	0(0.0%)
2012년	20(80.0%)	5(20.0%)	0(0.0%)	0(0.0%)	0(0.0%)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개최 횟수를 조사한 결과 대학 및 정부출연(연) 모두 매년 개최횟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최건수는 대부분 1-3건이 가장

많았고 10건 이상의 개최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9〉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개최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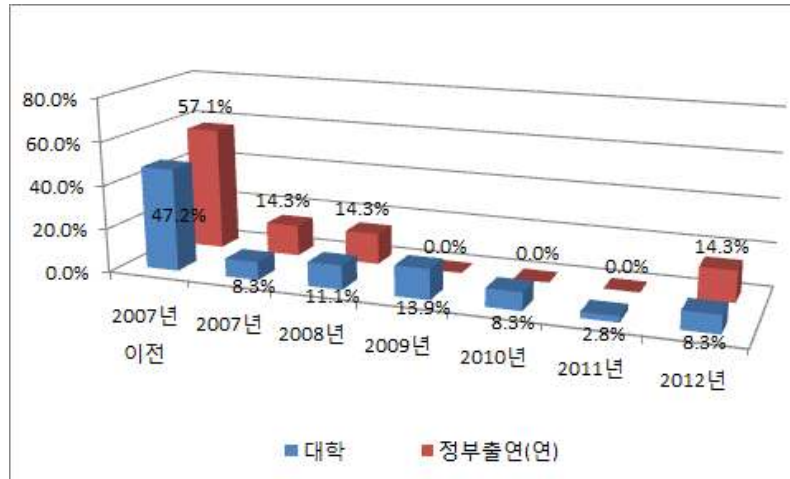
3)-7.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설치시기

〈표 3-25〉 IRB의 설치시기

설치시기	대학	정부출연(연)
2007년 이전	17 (47.2%)	4 (57.1%)
2007년	3 (8.3%)	1 (14.3%)
2008년	4 (11.1%)	1 (14.3%)
2009년	5 (13.9%)	0 (0.0%)
2010년	3 (8.3%)	0 (0.0%)
2011년	1 (2.8%)	0 (0.0%)
2012년	3 (8.3%)	1 (14.3%)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설치시기를 조사한 결과 대학의 경우 2007년 이전에 설치된 비율이 4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2009년에 13.9%, 2008년에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연)의 경우도 2007년 이전에 설치된 비율이 5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2008년과 2009년 모두 14.3%의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3-10> IRB의 설치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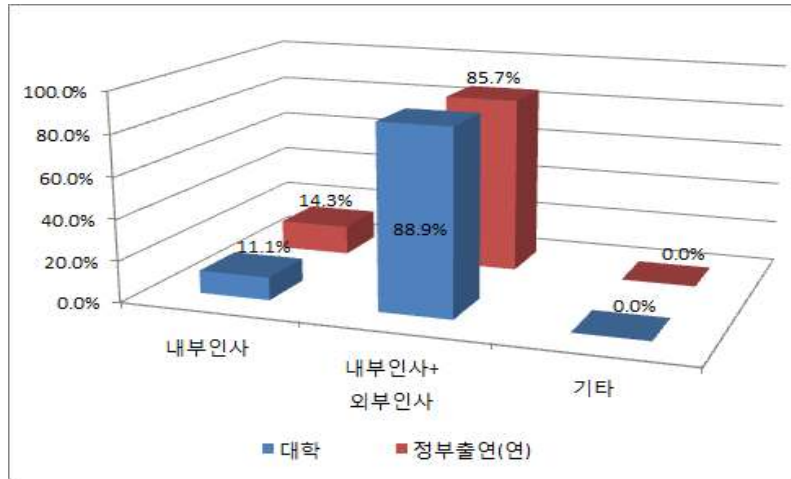
3)-8.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구성 형태

<표 3-26> IRB의 구성형태

	대학	정부출연(연)
내부인사	4 (11.1%)	1 (14.3%)
내부인사+외부인사	32 (88.9%)	6 (85.7%)
기타	0 (0.0%)	0 (0.0%)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구성 형태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의 경우는 내부인사와 외부인사로 위원회가 구성된 비율이 88.9%의 비율을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내부인사로만 구성된 비율이 11.1%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정부출연(연)의 경우도 내부인사와 외부인사로 위원회가 구성된 비율이 8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내부인사로만 구성된 비율이 14.3%로 나타났다.

〈그림 3-11〉 IRB 구성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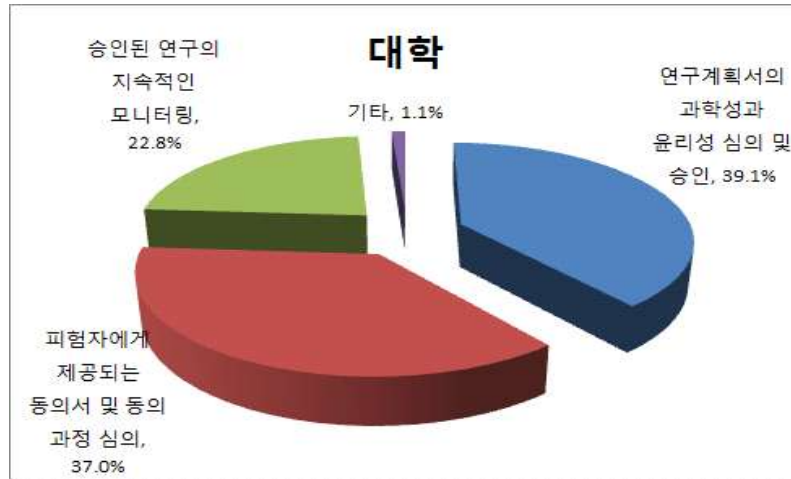
3)-9.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기능 (복수응답)

〈표 3-27〉 IRB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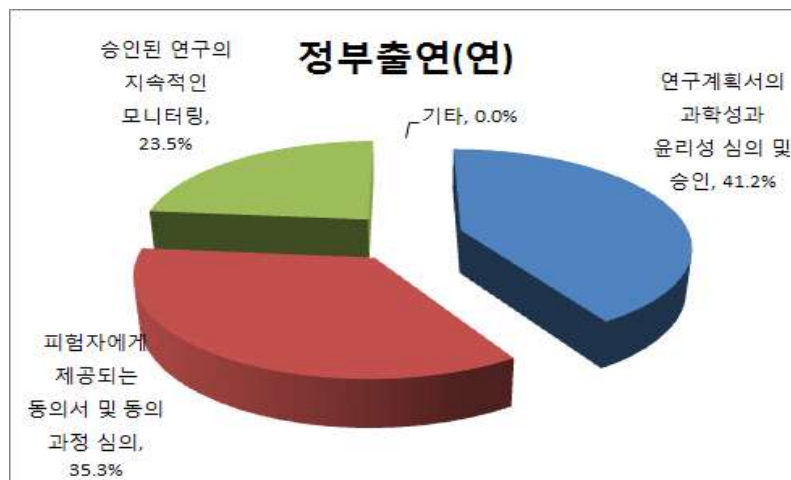
	대학	정부출연(연)
연구계획서의 과학성과 윤리성 심의 및 승인	36 (39.1%)	7 (41.2%)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동의서 및 동의 과정 심의	34 (37.0%)	6 (35.3%)
승인된 연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21 (22.8%)	4 (23.5%)
기타	1 (1.1%)	0 (0.0%)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기능에 대한 조사결과 대학과 정부출연(연) 모두에서 연구계획서의 과학성과 윤리성 심의 및 승인,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동의서 및 동의 과정 심의, 승인된 연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을 모두 고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대학에서의 IRB의 기능



〈그림 3-13〉 정부출연(연)에서의 IRB의 기능



3)-10.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개최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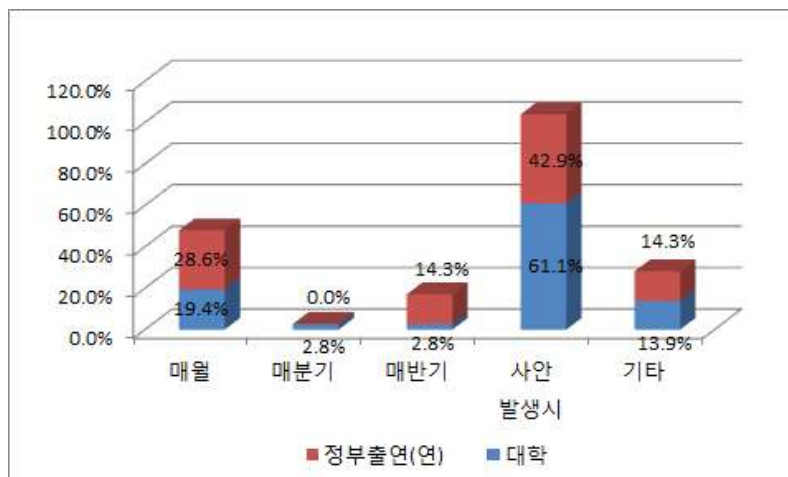
〈표 3-28〉 IRB의 개최주기

개최주기	대학	정부출연(연)
매월	7 (19.4%)	2 (28.6%)
매분기	1 (2.8%)	0 (0.0%)
매반기	1 (2.8%)	1 (14.3%)
사안 발생시	22 (61.1%)	3 (42.9%)
기타	5 (13.9%)	1 (14.3%)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개최 주기에 대한 조사결과 대학과 정부출연(연) 모두

사안 발생에 따라 개최를 하는 경우가 61.1%와 4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매월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연구윤리부정사건에 비교하여 IRB심의건수가 훨씬 많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그림 3-14〉 IRB의 개최주기



3)-11.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개최 횟수

〈표 3-29〉 대학 IRB의 개최 횟수

	없음	1 ~ 3 건	4 ~ 6건	7 ~ 9 건	10건 이상
2007년 이전	27(75.0%)	1(2.8%)	1(2.8%)	1(2.8%)	6(16.7%)
2007년	22(61.1%)	6(16.7%)	1(2.8%)	1(2.8%)	6(16.7%)
2008년	21(58.3%)	7(19.4%)	1(2.8%)	0(0.0%)	7(19.4%)
2009년	18(50.0%)	9(25.0%)	2(5.6%)	0(0.0%)	7(19.4%)
2010년	16(44.4%)	9(25.0%)	1(2.8%)	2(5.6%)	8(22.2%)
2011년	7(19.4%)	12(33.3%)	4(11.1%)	2(5.6%)	11(30.6%)
2012년	8(22.2%)	14(38.9%)	5(13.9%)	3(8.3%)	6(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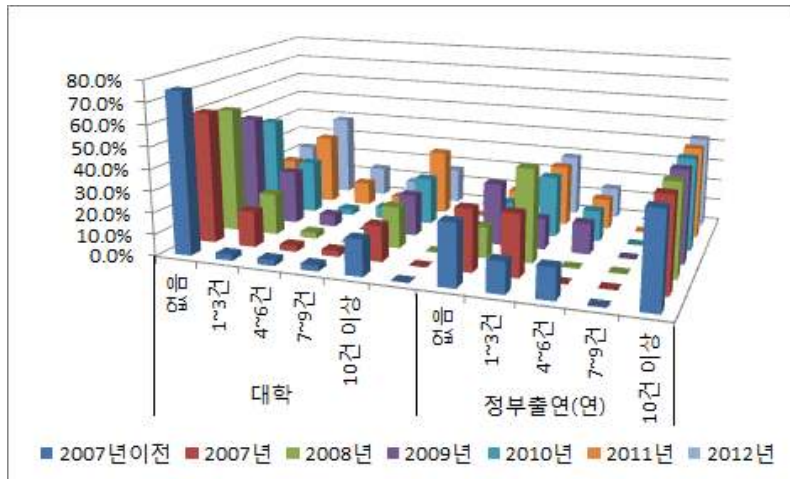
〈표 3-30〉 정부출연(연) IRB의 개최 횟수

	없음	1 ~ 3 건	4 ~ 6건	7 ~ 9 건	10건 이상
2007년 이전	2(28.6%)	1(14.3%)	1(14.3%)	0(0.0%)	3(42.9%)
2007년	2(28.6%)	2(28.6%)	0(0.0%)	0(0.0%)	3(42.9%)
2008년	1(14.3%)	3(42.9%)	0(0.0%)	0(0.0%)	3(42.9%)
2009년	2(28.6%)	1(14.3%)	1(14.3%)	0(0.0%)	3(42.9%)
2010년	1(14.3%)	2(28.6%)	1(14.3%)	0(0.0%)	3(42.9%)
2011년	1(14.3%)	2(28.6%)	1(14.3%)	0(0.0%)	3(42.9%)

2012년	1(14.3%)	2(28.6%)	1(14.3%)	0(0.0%)	3(42.9%)
-------	----------	----------	----------	---------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개최 횟수에 대한 조사결과 대학과 정부출연(연) 모두 매년 개최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는 기관별로 10건 이상을 다루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림 3-15〉 IRB의 개최 횟수



3)-12. 연구윤리관련 위원회 미설치 기관의 경우 설치의 필요성 여부

〈표 3-31〉 연구윤리관련 위원회 미설치 기관의 설치 필요성 여부

	대학	정부출연(연)
필요	25 (78.1%)	1 (50.0%)
불필요	7 (21.9%)	1 (50.0%)

연구윤리관련 미설치 기관의 경우 설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학의 경우는 약 78.1%정도가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출연(연)의 경우는 단지 50.0%만이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3. 연구윤리관련 위원회 미설치 기관의 경우 향후 설치 유형

〈표 3-32〉 연구윤리관련 위원회 미설치 기관의 향후 설치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24 (85.7%)	0 (0.0%)
기관심의위원회(IRB)	4 (14.3%)	1 (100.0%)

연구윤리관련 미설치 기관의 경우 향후 설치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학의 경우는 약 85.7%정도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출연(연)의 경우는 IRB에 대한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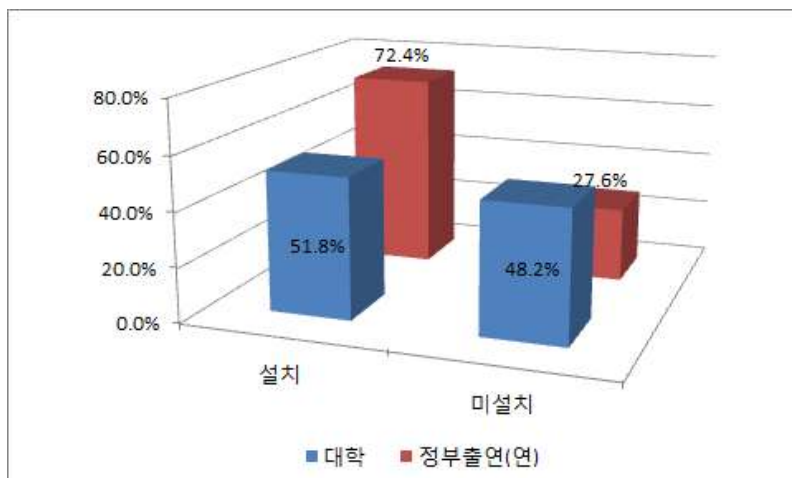
4) 연구윤리 관련 부서가 설치여부

〈표 3-33〉 연구윤리관련 부서 설치여부

	대학	정부출연(연)
설치	100 (51.8%)	21 (72.4%)
미설치	93 (48.2%)	8 (27.6%)

연구윤리 관련 부서가 설치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과 정부출연(연)이 각각 51.8%와 72.4%로 지난 2010년의 44.7%와 52.5%에 비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연구윤리관련 부서 설치 여부



4)-1. 연구윤리 관련 부서 설치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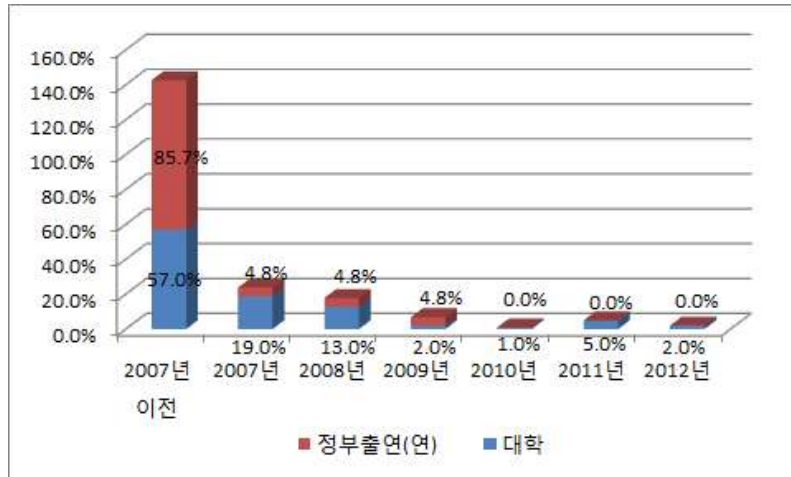
〈표 3-34〉 연구윤리 관련 부서 설치시기

설치시기	대학	정부출연(연)
2007년 이전	57 (57.0%)	18 (85.7%)
2007년	19 (19.0%)	1 (4.8%)
2008년	13 (13.0%)	1 (4.8%)
2009년	2 (2.0%)	1 (4.8%)
2010년	1 (1.0%)	0 (0.0%)

2011년	5 (5.0%)	0 (0.0%)
2012년	3 (2.0%)	0 (0.0%)

연구윤리 관련 부서 설치시기는 대학과 정부출연(연) 모두 2007년 이전에 설치된 비율이 57.0%와 8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연구윤리 관련 부서 설치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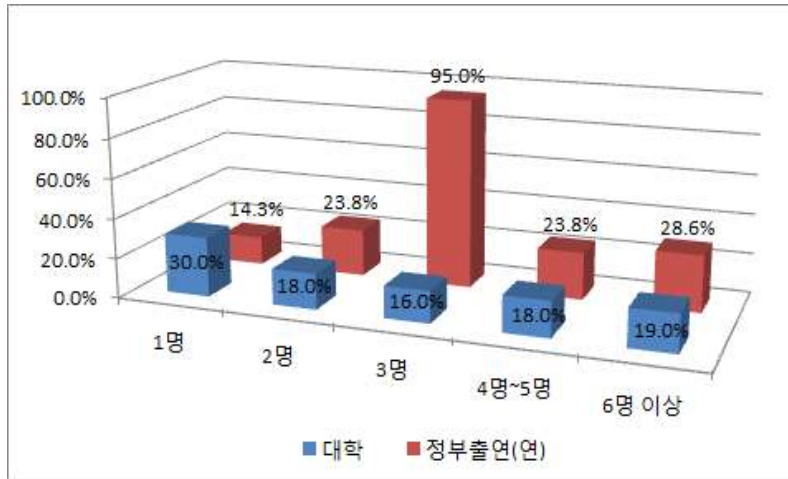
4)-2. 연구윤리 관련 부서의 구성 인원

<표 3-35> 연구윤리관련 부서의 구성 인원

구성인원	대학	정부출연(연)
1명	30 (30.0%)	3 (14.3%)
2명	18 (18.0%)	5 (23.8%)
3명	16 (16.0%)	2 (9.5%)
4명~5명	18 (18.0%)	5 (23.8%)
6명 이상	19 (19.0%)	6 (28.6%)

연구윤리 관련 부서의 구성 인원은 대학과 출연(연)의 경우 모두 5명 이하가 약 81%와 71%정도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 연구윤리 관련 부서의 구성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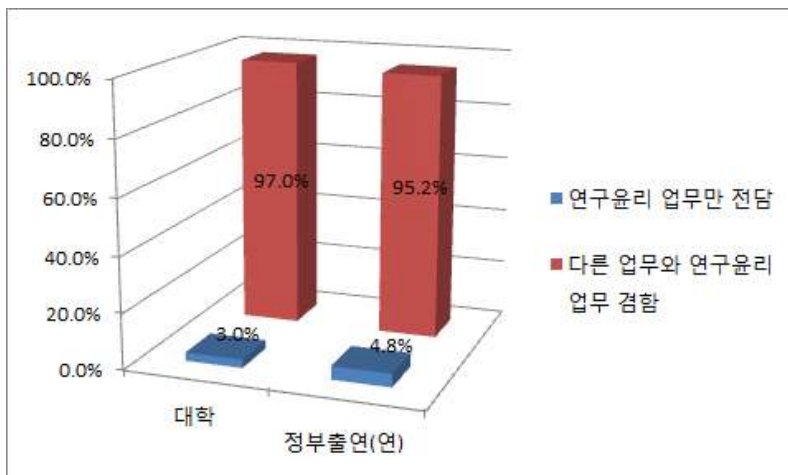
4)-3. 연구윤리 관련 부서 담당자 업무 분장

〈표 3-36〉 연구윤리관련 부서 담당자 업무 분장

	대학	정부출연(연)
연구윤리 업무만 전담	3 (3.0%)	1 (4.8%)
다른 업무와 연구윤리 업무 겸함	97 (97.0%)	20 (95.2%)

연구윤리 관련 부서 담당자 업무 분장에 관한 조사에서 연구윤리 업무만 전담하는 대학은 3개교로 서울 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무기명 1개교 등 이었으며, 그 비율은 대학의 3.0%로 매우 낮았다. 정부출연(연)의 경우도 연구윤리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기관은 KIST 1개원으로 전체 출연(연)의 4.8%로 매우 낮았다.

〈그림 3-19〉 연구윤리 관련 부서의 업무분장



4)-4. 연구윤리 관련 부서 설치 단위

〈표 3-37〉 연구윤리관련 부서의 설치 단위

	대학본부	단과대학	기타
대학	76 (76.0%)	1 (1.0%)	23 (23.0%)

대학의 경우 연구윤리 관련 부서는 75%의 대학이 대학본부인 연구처 혹은 교무처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는 대부분 산학협력단으로 나타났다.

4)-5. 연구윤리 관련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치 필요성 여부

〈표 3-38〉 연구윤리관련 부서 미설치 기관의 설치 필요성 여부

	대학	정부출연(연)
필요	44 (47.3%)	5(62.5%)
불필요	49 (52.7)	3(37.5%)

연구윤리 관련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 대한 부서 설치 필요성 여부 조사에서 대학은 47.1%가 정부출연(연)은 62.5%가 설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5) 연구부정행위 처리의 횟수 및 종류, 처벌

5)-1. 연구부정행위를 처리한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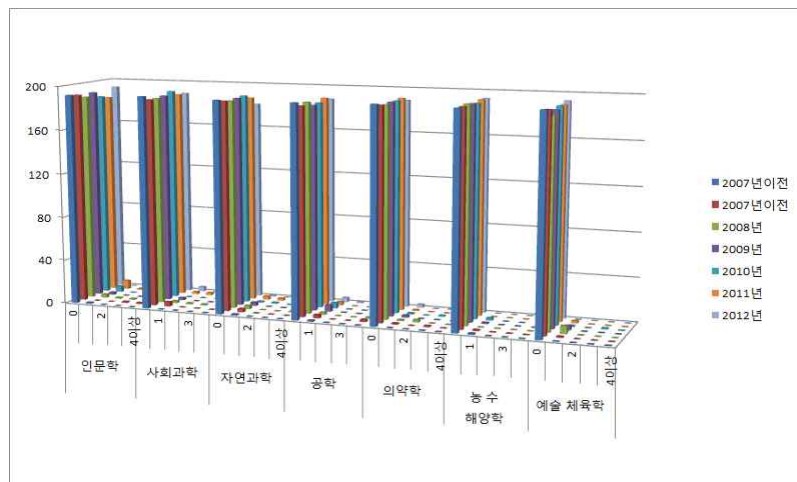
〈표 3-39〉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처리 횟수

	횟수 (건)	2007년 이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 문 학	0	192	191	188	191	186	184	193
	1	1	0	3	2	5	8	0
	2	0	0	1	0	0	1	0
	3	0	1	1	0	0	0	0
	4이상	0	1	0	0	2	0	0
사 회 과 학	0	193	189	189	190	193	189	189
	1	0	4	2	2	0	2	4
	2	0	0	1	0	0	2	0
	3	0	0	1	0	0	0	0
	4이상	0	0	0	1	0	0	0

자연과학	0	192	190	189	190	191	188	181
	1	1	3	3	3	1	3	1
	2	0	0	0	0	1	2	0
	3	0	0	0	0	0	0	0
	4이상	0	0	1	0	0	0	1
공학	0	192	188	190	196	197	190	188
	1	1	3	2	6	5	3	4
	2	0	0	0	0	0	0	1
	3	0	0	0	0	0	0	0
	4이상	0	2	1	1	0	0	0
의약학	0	193	191	190	191	191	192	189
	1	0	1	1	2	1	1	3
	2	0	0	2	0	0	0	0
	3	0	1	0	0	1	0	1
	4이상	0	0	0	0	0	0	0
농·수·해양학	0	192	192	193	192	191	193	193
	1	1	1	0	1	2	0	0
	2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4이상	0	0	0	0	0	0	0
예술·체육학	0	193	192	186	199	191	191	193
	1	0	1	7	4	1	2	0
	2	0	0	0	0	0	0	0
	3	0	0	0	0	1	0	0
	4이상	0	0	0	0	0	0	0

연구부정행위를 처리한 횟수에 관한 조사에서 대학의 경우는 2007년 이후 매년 처리 횟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자연과학, 의학, 공학, 인문학 분야의 처리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0〉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처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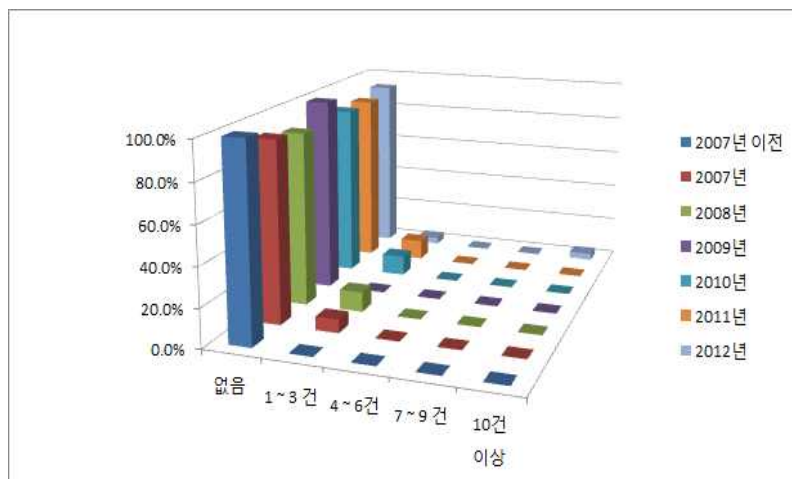


연구부정행위를 처리한 횟수에 관한 조사에서 정부출연(연)의 경우도 2007년 이후 3건 이하의 처리 횟수를 보유한 기관이 약 10% 내외로 존재하였으며 특히 2012년의 경우 부정행위를 10건 이상 처리한 기관도 1 곳 조사 되었다.

〈표 3-40〉 정부출연(연)의 연구부정행위 처리 횟수

	없음	1 ~ 3 건	4 ~ 6건	7 ~ 9 건	10건 이상
2007년 이전	29(100.0%)	0(0.0%)	0(0.0%)	0(0.0%)	0(0.0%)
2007년	27(93.1%)	2(6.9%)	0(0.0%)	0(0.0%)	0(0.0%)
2008년	26(89.7%)	3(10.3%)	0(0.0%)	0(0.0%)	0(0.0%)
2009년	29(100.0%)	0(0.0%)	0(0.0%)	0(0.0%)	0(0.0%)
2010년	26(89.7%)	3(10.3%)	0(0.0%)	0(0.0%)	0(0.0%)
2011년	26(89.7%)	3(10.3%)	0(0.0%)	0(0.0%)	0(0.0%)
2012년	27(93.1%)	1(3.5%)	0(0.0%)	0(0.0%)	1(3.5%)

〈그림 3-21〉 정부출연(연)의 연구부정행위 처리 횟수



5)-2. 연구부정행위의 종류

〈표 3-41〉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종류

	2007년 이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위조	0	0	3	2	0	0	1
변조	0	1	2	1	0	2	2
표절	1	17	25	10	17	13	7
부당한 논문저자표 시	0	7	11	8	11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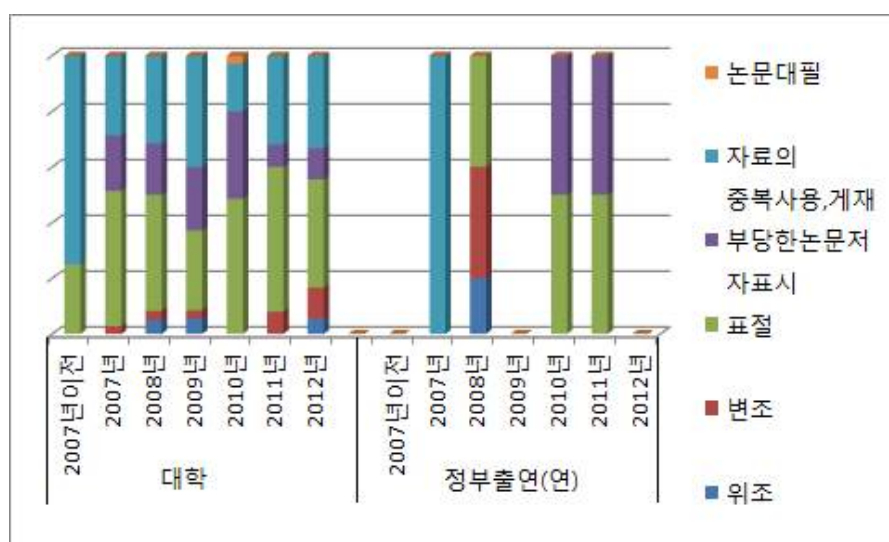
자료의 중복사용, 중복게재	3	10	19	14	5	8	6
논문대필	0	0	0	0	1	0	0

〈표 3-42〉 정부출연(연)의 연구부정행위 종류

	2007년 이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위조	0	0	1	0	0	0	0
변조	0	0	2	0	0	0	0
표절	0	0	2	0	1	4	0
부당한 논문저자표 시	0	0	0	0	1	1	0
자료의 중복사용, 중복게재	0	2	0	0	0	0	0
논문대필	0	0	0	0	0	0	0

대학과 정부출연(연)에서 그동안 처리한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에 관한 조사에서 대학의 경우는 표절과 중복게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가 많았다. 위조와 변조는 다른 부정행위에 비해 그 건수가 매우 적었다. 정부출연(연)의 경우도 표절이 연구부정행위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복게재와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가 동일하게 많이 발생했다. 위조와 변조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다른 부정행위에 비해 그 건수가 매우 적었다.

〈그림 3-22〉 처리한 연구부정행위 종류



5)-3. 연구 부정행위 판정시 제재의 형태

〈표 3-43〉 대학에서 연구부정행위 판정시 제재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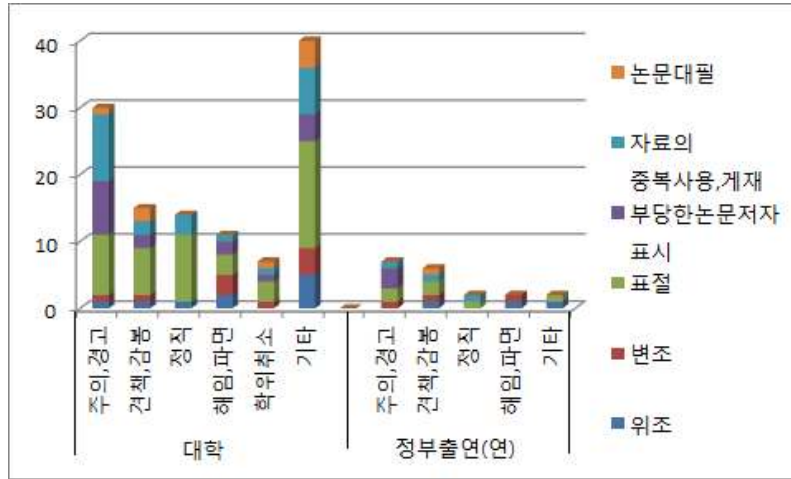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학위 취소	기타
위조	1	1	1	2	0	5
변조	1	1	0	3	1	4
표절	9	7	10	3	3	16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8	2	0	2	1	4
자료의 중복사용, 중복게재	10	2	3	1	1	7
논문대필	1	2	0	0	1	4

〈표 3-44〉 정부출연(연)에서 연구부정행위 판정시 제재의 형태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기타
위조	0	1	0	1	1
변조	1	1	0	1	0
표절	2	2	1	0	1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3	0	0	0	0
자료의 중복사용, 중복게재	1	1	1	0	0
논문대필	0	1	0	0	0

연구 부정행위 판정시 제재의 형태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의 경우는 위조, 변조와 같은 심각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해임, 파면, 학위취소 등의 매우 강한 수위의 처벌이 있었으며 표절에 대해서는 표절의 정도에 따라 파면 혹은 해임뿐만이 아니라 정직, 감봉 등의 다소 수위가 낮은 중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자료의 중복사용과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상대적으로 경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연)의 경우에도 위조, 변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가 있었으나, 표절에 대해서는 정직 혹은 감봉 등의 처벌이 내려졌고 자료의 중복사용과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에 대해서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주의·경고 등 상대적으로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 연구부정행위 판정시 제재의 형태



5)-4. 논문대필 (대학)

a. 논문 대필이 발견된 경우 지도 교수 처벌 규정이 있는지 여부

〈표 3-45〉 논문대필 발견시 지도교수 처벌 규정 존재 여부

	존재	미존재
교수 처벌 규정	60 (31.1%)	133 (68.9%)

b. 논문 대필이 발견될 경우 지도 교수를 처벌할 관련 규정개설의 필요성 여부

〈표 3-46〉 논문대필 발견시 지도교수 처벌 규정 필요성 여부

	필요	불필요
교수 처벌 규정의 필요성	99 (74.4%)	34 (25.6%)

c. 논문 대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 교수의 관리가 강화를 위한 교수 1인당 지도 학생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표 3-47〉 지도교수 1인당 지도 학생수 규정의 존재 여부

	존재	미존재
교수 1인당 학생수 규정	75 (38.9%)	118 (61.1%)

d. 논문 대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 교수의 관리가 강화를 위한 교수 1인당 지도 학생수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

〈표 3-48〉 교수 1인당 지도 학생수 규정의 필요성 여부

	필요	불필요
학생수 규정의 필요성	60 (50.9%)	58 (49.1%)

대학에서 논문대필에 대한 지도 교수 처벌규정은 31.1%의 대학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미 보유 대학의 경우 향후 처벌 규정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4.4%가 찬성하였다. 논문 대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 교수의 관리강화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교수 1인당 지도 학생수에 대한 규정을 보유한 대학은 38.9%의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미 제정 대학의 50.9%가 관련 규정의 설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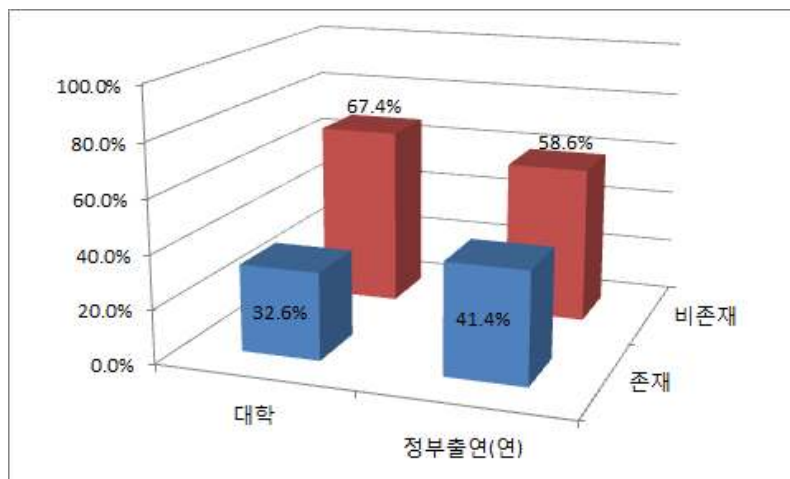
5)-5.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여부

〈표 3-49〉 연구부정행위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존재 여부

	대학	정부출연(연)
존재	63 (32.6%)	12 (41.4%)
비존재	130 (67.4%)	17 (58.6%)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이나 정부출연(연) 모두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은 비율이 67.4%와 58.6%로 홈페이지가 개설된 비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4〉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 홈페이지 개설 여부



5)-6.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의 필요성

<표 3-50> 연구부정행위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의 필요성 여부

	대학	정부출연(연)
필요	80 (61.5%)	7 (41.2%)
불필요	50 (38.5%)	10 (58.8%)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지 않은 기관의 개설 여부에 대한 필요성 조사에서 대학은 61.5%가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정부출연(연)은 41.2%만이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5)-7.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면했던 어려움 (복수 응답)

<표 3-51> 연구부정행위 처리과정의 어려움

	대학	정부출연(연)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에 관한 검증자료수집의 어려움	82 (21.3%)	11 (17.5%)
동료연구자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한 심정적 부담과 많은 시간소요를 이유로 조사위원이 되기를 기피하여 조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움	75 (19.3%)	12 (19.1%)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 판정기준자체가 상세화 되어 있지 않아 판정이 어려움	76 (19.6%)	10 (15.9%)
조사위원들간의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 판정에 관한 의견차가 심함	25 (6.4%)	3 (4.8%)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를 처리할때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담당주체를 분리하기 어려움	26 (6.7%)	6 (9.5%)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 처리를 위한 대내·외 전문가의 부족	68 (17.5%)	16 (25.4%)
기타	36 (9.3%)	5 (7.9%)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면했던 어려움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과 정부출연(연) 모두 조사한 항목에 대해 모두 고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는 특히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에 관한 검증자료수집의 어려움이 21.3%의 비율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연구부적절행위 판정기준자체가 상세화 되어 있지 않아 판정이 어렵다는 응답이 19.6%, 동료연구자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한 심정적 부담과 많은 시간소요를 이유로 조사위원이 되기를 기피하여 조사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응답이 19.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출연(연)의 경우는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 처리를 위한 대내·외전문가의 부족이 25.4%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동료연구자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한 심정적 부담과 많은 시간소요를 이유로 조사위원이 되기를 기피하여 조사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응답이 19.1%,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에 관한 검증자료수집의 어려움이 17.5%의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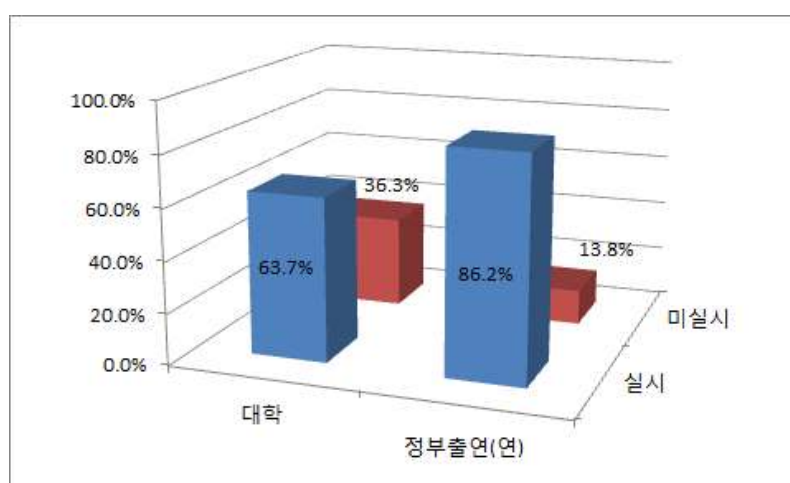
6) 연구윤리 관련 교육 실시 여부

〈표 3-52〉 연구윤리 관련 교육 실시 여부

	대학	정부출연(연)
실시	123 (63.7%)	25 (86.2%)
미실시	70 (36.3%)	4 (13.8%)

연구윤리 관련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과 정부출연(연)의 각각 63.7%와 86.2%가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조사결과인 56.5%와 70.0%에 비해 다소 증가된 비율이다.

〈그림 3-25〉 연구윤리 관련 교육 실시 여부



7) 연구윤리 교육의 시기 및 대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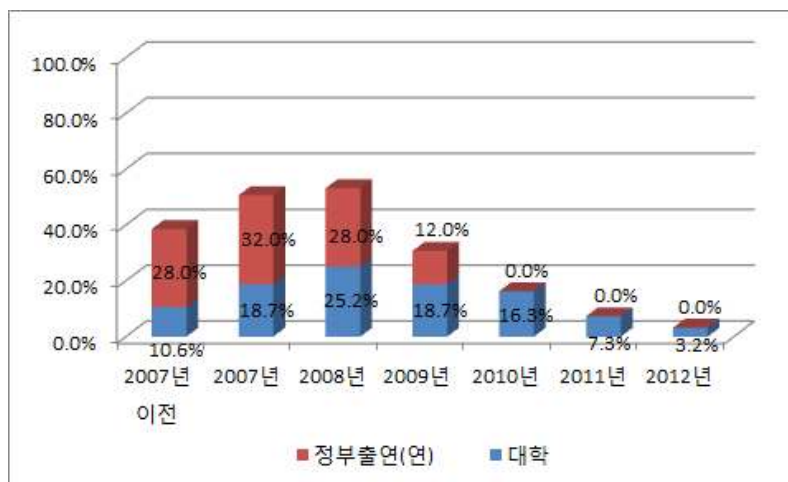
7)-1. 연구윤리 관련 교육 시작 시점

〈표 3-53〉 연구윤리 교육 시작 시점

	대학	정부출연(연)
2007년 이전	13 (10.6%)	7 (28.0%)
2007년	23 (18.7%)	8 (32.0%)
2008년	31 (25.2%)	7 (28.0%)
2009년	23 (18.7%)	3 (12.0%)
2010년	20 (16.3%)	0 (0.0%)
2011년	9 (7.3%)	0 (0.0%)
2012년	4 (3.2%)	0 (0.0%)

연구윤리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시점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의 경우는 주로 2007년 이후 매년 꾸준히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정부출연(연)은 대부분 이미 2007년 이전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2009년까지 대부분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6〉 연구윤리 교육 시작 시점



7)-2. 연구윤리 교육 대상에 대한 조사

a. 대학

〈표 3-54〉 대학에서의 연구윤리 교육 대상별 실시 여부

	대학	
	실시	미 실시

학부생	49 (39.8%)	74 (60.2%)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86 (69.9%)	37 (30.1%)
교원 및 연구원	120 (97.6%)	3 (2.4%)
연구담당 행정 실무자	102 (82.3%)	21 (17.1%)

b. 정부출연(연)

<표 3-55> 정부출연(연)에서의 연구윤리 교육 대상별 실시 여부

	정부출연(연)	
	실시	미실시
전임 연구원	24 (96.0%)	1 (4.0%)
비전임 연구원	23 (92.0%)	2 (8.0%)
연구담당 행정 실무	24 (96.0%)	1 (4.0%)

연구윤리 교육 대상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의 경우는 교원과 연구윤리업무 대상자에 대해서는 97.6%와 82.3%의 비율로 매우 높았으나 대학원생과 학부생에 대해서는 69.9%와 39.8%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연)의 경우는 전임연구원, 비전임 연구원, 연구담당 행정직원 모두에게 90%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대학에 비교하여 비교적 교육이 잘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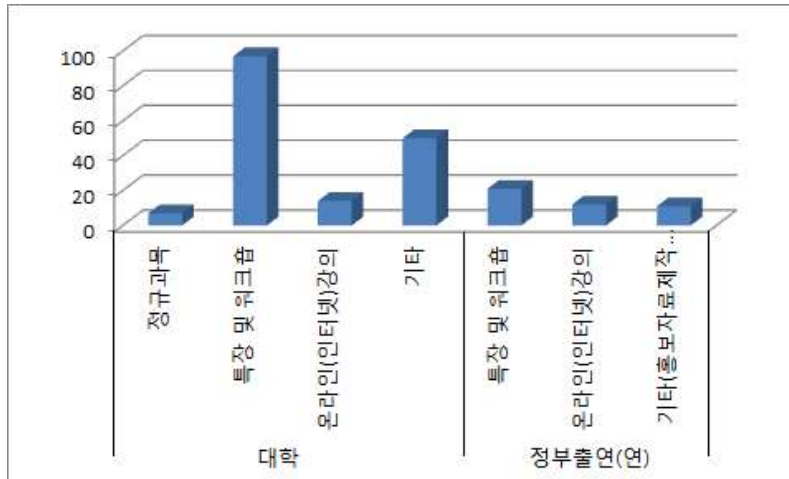
7)-3. 연구윤리교육의 형태

<표 3-56> 연구윤리 교육의 형태

대학				정부출연(연)		
정규과목	특강 및 워크숍	온라인 (인터 넷) 강의	기타	특강 및 워크숍	온라인 (인터넷) 강의	기타(홍보자료 제작 배포 등)
7	97	14	50	21	12	11

연구윤리 교육의 형태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의 경우는 주로 특강과 홍보자료 배포 등의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정규과목과 온라인 교육의 실시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출연(연)의 경우도 특강 및 워크숍을 통한 교육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교육의 실시와 홍보자료 배포 등의 방법이 유사한 빈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7〉 연구윤리 교육 형태



7)-4. 연구윤리교육 담당자 (복수응답)

〈표 3-57〉 연구윤리 교육의 담당자

	대학	정부출연(연)
기관 내의 관련 전문가	63 (44.7%)	3 (9.4%)
기관 내의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37 (26.2%)	9 (28.1%)
외부 전문가	16 (11.4%)	12 (37.5%)
외부 전담기관에 위탁	225 (17.7%)	8 (25.0%)

연구윤리교육의 담당자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의 경우는 기관내의 관련전문가 단독 강의가 4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기관내 전문가와 외부전문가의 공동강의가 26.2% 이었으며 외부 전담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가 17.7%,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단독강의가 11.4%로 나타났다. 정부출연(연)의 경우는 외부 전문가 단독 강의가 3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관내 전문가와 외부전문가의 공동강의가 28.1% 이었으며, 외부전담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25.0%, 내부 전문가의 단독강의는 9.4%로 나타났다.

7)-5. 연구윤리 관련 교육 미 실시 경우

7)-5-1.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표 3-58〉 연구윤리 교육 미 실시 이유

	대학	정부출연(연)
교육에 대한 필요성 없음	16 (17.0%)	0 (0.0%)

강사부족	24 (25.5%)	3 (50.0%)
교재부족	12 (12.8%)	0 (0.0%)
예산부족	23 (24.5%)	2 (33.3%)
기타	19 (20.2%)	1 (16.7%)

연구윤리 관련 교육 미실시 기관이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강사부족과 예산부족이 25.5%와 25.5%로 가장 큰 이유였으며 다음으로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서가 17.0%, 교재 부족이 12.8%로 나타났다. 정부출연(연)의 경우는 강사부족이 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예산부족이 33.3%로 조사되었다.

7)-5-2. 연구윤리 관련 교육 실시의 필요성

〈표 3-59〉 연구윤리 교육 실시의 필요성

	대학	정부출연(연)
필요	53 (74.7%)	4 (100.0%)
불필요	18 (25.3%)	0 (0.0%)

연구윤리교육 미 실시기관의 경우 특히 대학과 정부 출연(연) 모두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74.7%와 100%의 비율로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8) 학위논문(대학)

8)-1. 학위 논문 제출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제출 요구여부 및 필요성 여부

〈표 3-60〉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제출 및 필요성 여부

	제출 요구여부	미제출 경우 필요성 여부
필요	106 (54.9%)	70 (80.5%)
불필요	87 (45.1%)	17 (19.5%)

학위 논문 제출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학은 54.9%로 2010년에 조사한 비율 16.8%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미실시 대학의 경우 80.5%가 그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학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9) 연구윤리 활동 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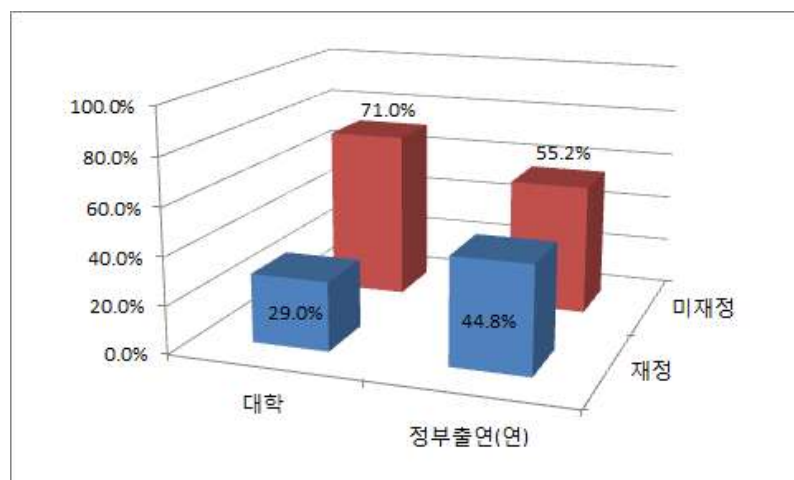
9)-1. 연구윤리 활동 경비의 유무

<표 3-61> 연구윤리 활동 경비의 유무

	대학	정부출연(연)
있음	56 (29.0%)	13 (44.8%)
없음	137 (71.0%)	15 (55.2%)

연구윤리 활동 경비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 정부 출연(연) 모두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각각 29.0%와 44.8%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8> 연구윤리 활동 경비



9)-2. 연간 연구윤리 활동경비 예산

<표 3-62> 대학의 연구윤리 활동경비 예산

대학	없음	1000만원	1,000~ 3,000 만원미만	3,000~ 5,000 만원미만	5,000 만원이상
2007년이전:연구진실성검증	47(83.9%)	8(14.3%)	1(1.8%)	0(0.00%)	0(0.00%)
2007년이전:연구윤리교육	39(69.6%)	16(28.6%)	0(0.00%)	0(0.00%)	1(1.8%)
2007년:연구진실성검증	37(66.1%)	18(32.1%)	1(1.8%)	0(0.00%)	0(0.0%)
2007년:연구윤리교육	36(64.3%)	18(32.1%)	1(1.8%)	0(0.00%)	1(1.8%)
2008년:연구진실성검증	30(53.6%)	22(39.3%)	1(1.8%)	2(3.6%)	0(0.00%)
2008년:연구윤리교육	25(44.6%)	27(48.2%)	3(5.4%)	0(0.00%)	1(1.8%)
2009년:연구진실성검증	29(51.8%)	24(42.9%)	3(5.4%)	0(0.00%)	0(0.00%)
2009년:연구윤리교육	17(30.4%)	35(62.5%)	3(5.4%)	0(0.00%)	1(1.8%)
2010년:연구진실성검증	26(49.06%)	26(46.4%)	4(7.1%)	0(0.00%)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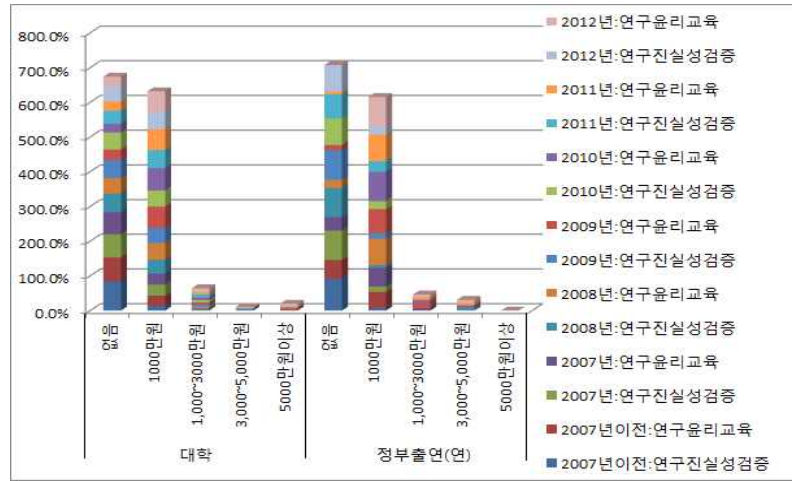
2010년:연구윤리교육	14(25.02%)	36(64.3%)	4(7.1%)	1(1.8%)	1(1.8%)
2011년:연구진실성검증	21(37.5%)	29(51.8%)	5(8.9%)	1(1.8%)	0(0.00%)
2011년:연구윤리교육	15(26.8%)	34(60.7%)	4(7.1%)	1(1.8%)	2(3.6%)
2012년:연구진실성검증	24(42.9%)	28(50.0%)	2(3.6%)	0(0.00%)	2(3.6%)
2012년:연구윤리교육	16(28.6%)	33(58.9%)	4(7.1%)	1(1.8%)	2(3.6%)

<표 3-63>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활동경비 예산

정부출연(연)	없음	1000 만원	1,000~ 3,000 만 원 미만	3,000~ 5,000 만 원 미만	5,000 만 원 이 상
2007년이전:연구진실성검증	12(92.3%)	1(7.69%)	0(0.0%)	0(0.0%)	0(0.0%)
2007년이전:연구윤리교육	7(53.9%)	6(46.2%)	0(0.0%)	0(0.0%)	0(0.0%)
2007년:연구진실성검증	11(84.6%)	2(15.4%)	0(0.0%)	0(0.0%)	0(0.0%)
2007년:연구윤리교육	5(38.5%)	7(53.9%)	1(7.7%)	0(0.0%)	0(0.0%)
2008년:연구진실성검증	11(84.6%)	1(7.7%)	0(0.0%)	1(7.7%)	0(0.0%)
2008년:연구윤리교육	3(23.1%)	10(76.9%)	0(0.0%)	0(0.0%)	0(0.0%)
2009년:연구진실성검증	11(84.6%)	2(15.4%)	0(0.0%)	0(0.0%)	0(0.0%)
2009년:연구윤리교육	2(15.4%)	9(69.2%)	2(15.4%)	0(0.0%)	0(0.0%)
2010년:연구진실성검증	10(76.9%)	3(23.1%)	0(0.0%)	0(0.0%)	0(0.0%)
2010년:연구윤리교육	0(0.0%)	11(84.6%)	1(7.7%)	1(7.7%)	0(0.0%)
2011년:연구진실성검증	9(69.2%)	4(30.8%)	0(0.0%)	0(0.0%)	0(0.0%)
2011년:연구윤리교육	1(7.7%)	10(76.9%)	1(7.7%)	1(7.7%)	0(0.0%)
2012년:연구진실성검증	10(76.9%)	3(23.1%)	0(0.0%)	0(0.0%)	0(0.0%)
2012년:연구윤리교육	0(0.0%)	11(84.6%)	1(7.7%)	1(7.7%)	0(0.0%)

연구윤리 활동 경비로 집행한 금액에 대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기관이 1000만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윤리 교육 및 연구진실성 검증에 고루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9〉 연구윤리 활동 경비 예산



9)-3. 연구윤리활동 경비 지원처

〈표 3-64〉 연구윤리 활동경비 지원처

대학	연구진실성 검증	연구윤리 교육	정부출연(연)	연구진실성 검증	연구윤리 교육
대학본부	25 (44.6%)	19 (33.9%)	자체 자원	12 (92.3%)	11 (84.6%)
단과대학 /대학원	0 (0.0%)	0 (0.0%)	정부	1 (7.7%)	2 (15.4%)
산학협력단	29 (51.8%)	35 (62.5%)	기타	0 (0.0%)	0 (0.0%)
정부	0 (0.0%)	0 (0.0%)			
기타	2 (1.9%)	2 (3.6%)			

연구윤리 활동 경비 예산 지원의 주체는 대학의 경우 연구진실성 검증예산으로 산학협력단 51.8%와 대학본부 44.6%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연구윤리 교육 예산은 산학협력단이 62.5%, 대학본부가 33.9%로 나타났다. 정부출연의 경우는 대부분 연구진실성 검증과 교육을 위해 자체예산을 사용하는 비율이 92.3%와 84.6%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활동

10)-1.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자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

〈표 3-65〉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자체 활동 만족도

대학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러함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연구윤리위원회의	1 (0.5%)	7 (3.6%)	73 (37.8%)	103 (53.4%)	9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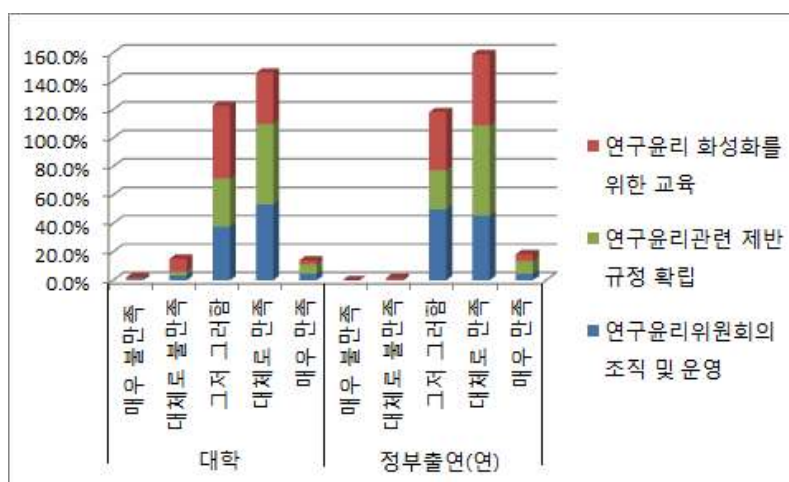
조직 및 운영					
연구윤리관련 제반 규정 확립	1 (0.5%)	5 (2.6%)	65 (33.7%)	109 (56.5%)	13 (6.7%)
연구윤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	2 (1.0%)	17 (8.8%)	99 (51.3%)	70 (36.3%)	5 (2.6%)

<표 3-66>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자체 활동 만족도

정부 출연(연)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리함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0 (0.0%)	0 (0.0%)	11 (50.0%)	10 (45.5%)	1 (4.6%)
연구윤리관련 제반 규정 확립	0 (0.0%)	0 (0.0%)	6 (27.3%)	14 (63.6%)	2 (9.1%)
연구윤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	0 (0.0%)	1 (4.6%)	9 (40.9%)	11 (50.0%)	1 (4.6%)

그동안 각 기관이 수행한 연구윤리 활동에 대한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 대학의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제반 규정 제정에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연구윤리 교육에서는 불만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출연(연)의 경우는 모든 분야에서 고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0> 연구윤리 자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



그동안 대학 및 정부출연(연)이 수행한 연구윤리 확립 노력 중 우수사례에 해당되는 내용은 신입교원 및 신입 연구원 대상 연구윤리교육 실시, 관련 지침 등의 제정 및 정비, 연구윤리자료 배포, 학위 논문 제출시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제출 의무화, 온라인 연구윤리교육 시스템 개발 및 실시, 표절예방을 위한 Turnitin™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조사되었다.

11)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

11)-1. 정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펼친 노력에 대한 평가

<표 3-67> 정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활동에 대한 만족도 - 대학

대학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리함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및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권고문’ 제시	0 (0.0%)	0 (0.0%)	33 (17.1%)	151 (78.2%)	19 (9.8%)
각종 책자 발간을 통해국 내·외 연구윤리 활동소 개	0 (0.0%)	2 (1.0%)	37 (19.2%)	134 (69.4%)	20 (10.4%)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대 학의 연구윤리활동 지원	0 (0.0%)	3 (1.6%)	62 (32.1%)	116 (60.1%)	12 (6.2%)
올바른 연구수행 논의를 위한 연구윤리포럼 및 전 사회 개최	0 (0.0%)	2 (1.0%)	59 (30.6%)	120 (62.2%)	12 (6.2%)
연구윤리 정보센터 포털 사이트 구축 및 운영	0 (0.0%)	2 (1.0%)	40 (20.7%)	130 (67.4%)	21 (10.9%)
연구윤리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과제 추 진	1 (0.5%)	3 (1.4%)	50 (25.9%)	118 (61.1%)	21 (10.9%)
연구윤리교육 전문가 양 성 및 교육대상 별 수요 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윤 리교육 실시	2 (1.0%)	4 (2.1%)	44 (22.8%)	122 (63.2%)	21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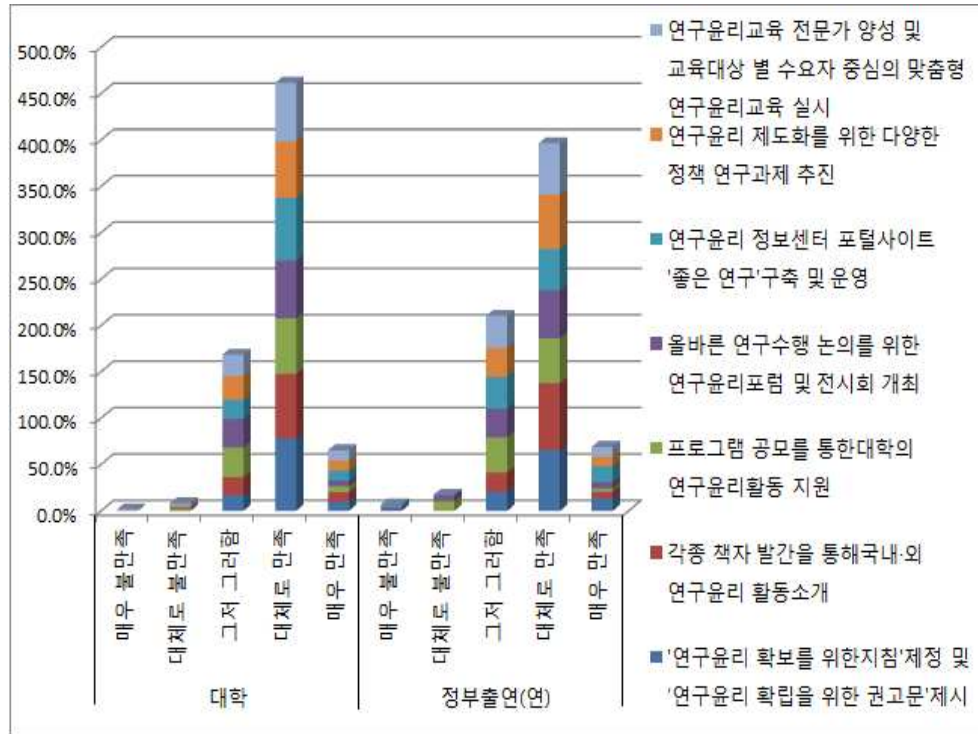
<표 3-68> 정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활동에 대한 만족도 - 정부출연(연)

정부출연(연)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리함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및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권고문’ 제시	0 (0.0%)	0 (0.0%)	6 (20.7%)	19 (65.5%)	4 (13.8%)

각종 책자 발간을 통해 국내·외 연구윤리 활동 소개	0 (0.0%)	0 (0.0%)	6 (20.7%)	21 (72.4%)	2 (6.9%)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대 학의 연구윤리활동 지원	0 (0.0%)	3 (10.3%)	11 (37.9%)	14 (48.3%)	1 (3.5%)
올바른 연구수행 논의를 위한 연구윤리포럼 및 전 사회 개최	1 (3.5%)	2 (6.9%)	9 (31.0%)	15 (51.7%)	2 (6.9%)
연구윤리 정보센터 포털 사이트 구축 및 운영	1 (3.5%)	0 (0.0%)	10 (34.5%)	13 (44.8%)	5 (17.2%)
연구윤리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과제 추 진	0 (0.0%)	0 (0.0%)	9 (31.0%)	17 (58.6%)	3 (10.3%)
연구윤리교육 전문가 양 성 및 교육대상 별 수요 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윤 리교육 실시	0 (0.0%)	0 (0.0%)	10 (34.5%)	16 (55.2%)	3 (10.3%)

정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펼친 노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학과 정부출연(연) 모두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50%이상으로 불만족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및 ‘연구윤리확립을 위한 권고문’ 제시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으나 기관에 대한 연구윤리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3-31〉 정부의 연구윤리 활동에 대한 평가



11)-2. 정부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력분야 (우선 순위 3가지)

〈표 3-69〉 정부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 - 대학

대학	1 순위	2 순위	3순위
각종 책자 발간을 통해 국내·외 연구윤리 활동 소개	37 (19.2%)	9 (4.7%)	11 (5.7%)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대학·학회·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활동 지원 사업	8 (4.1%)	14 (7.3%)	7 (3.6%)
올바른 연구수행 논의를 통한 연구윤리 포럼 및 전시회 개최	6 (3.1%)	10 (5.2%)	14 (7.2%)
대학 및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 협의체 운영	18 (9.3%)	10 (5.1%)	9 (4.7%)
대학 및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9 (4.7%)	18 (9.2%)	12 (6.3%)
교육대상별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보급	40 (20.7%)	25 (13.0%)	25 (13.0%)
기관 연구진실성 검증 실무(책임)자 협의체 운영	2 (1.0%)	8 (4.1%)	6 (3.1%)
연구진실성 검증 실무(책임)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	17 (8.8%)	25 (13.0%)	30 (15.5%)

연구윤리정보센터 포털사이트 운영의 고도화	3 (1.6%)	10 (5.2%)	14 (7.2%)
학계의 연구실적 평가 등 연구윤리 관련 제도 개선	11 (5.7%)	13 (6.7%)	16 (8.3%)
대학원생 대상 연구윤리 과목 이수 필수화 또는 졸업을 위한 PF제 실시	8 (4.1%)	14 (7.2%)	13 (6.7%)
표준화된 연구윤리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8 (9.3%)	27 (14.0%)	14 (7.3%)
연구윤리에 관한 국가적 정책조정기구(가칭 연구윤리정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7 (3.6%)	4 (2.1%)	12 (6.3%)
해외 연구윤리 선진 기관과의 국제적 교류협력 강화	3 (1.6%)	0 (0.0%)	2 (1.0%)
기관 연구윤리 전담인력(박사급) 양성 및 운용을 위한 지원	6 (3.2%)	6 (3.2%)	8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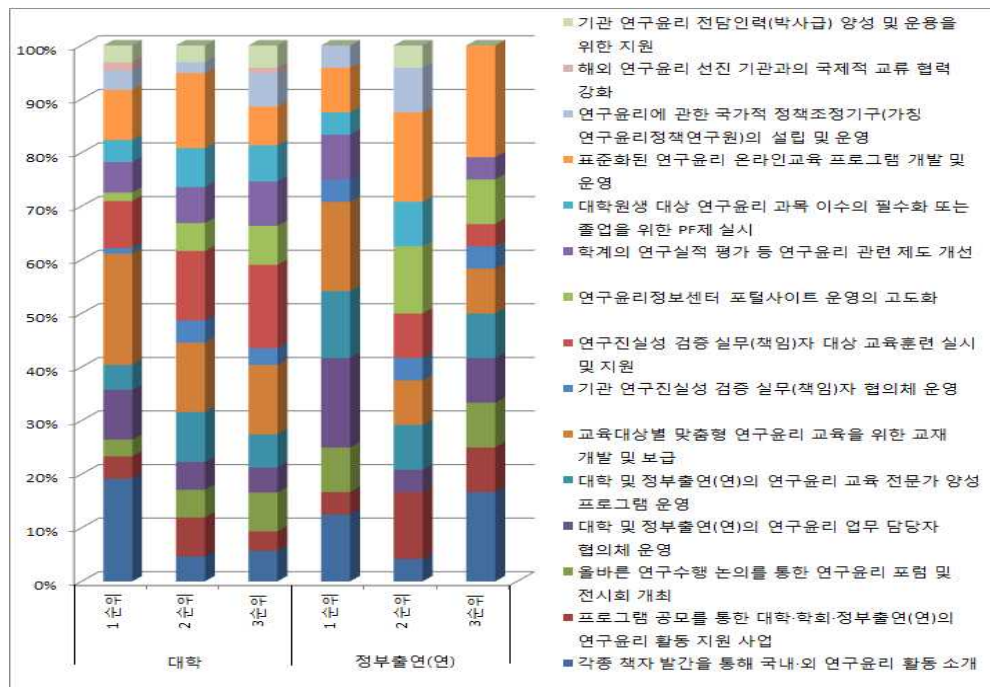
<표 3-70> 정부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 - 정부출연(연)

정부출연(연)	1 순위	2 순위	3순위
각종 책자 발간을 통해 국내·외 연구윤리 활동 소개	3 (12.5%)	1 (4.2%)	4 (16.7%)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대학·학회·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활동 지원 사업	1 (4.2%)	3 (12.5%)	2 (8.3%)
올바른 연구수행 논의를 통한 연구윤리 포럼 및 전시회 개최	2 (8.3%)	0 (0.0%)	2 (8.3%)
대학 및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 협의체 운영	4 (16.7%)	1 (4.2%)	2 (8.3%)
대학 및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3 (12.5%)	2 (8.3%)	2 (8.3%)
교육대상별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보급	4 (16.7%)	2 (8.3%)	2 (8.3%)
기관 연구진실성 검증 실무(책임)자 협의체 운영	1 (4.2%)	1 (4.2%)	1 (4.2%)
연구진실성 검증 실무(책임)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	0 (0.0%)	2 (8.3%)	1 (4.2%)
연구윤리정보센터 포털사이트 운영의 고도화	0 (0.0%)	3 (12.5%)	2 (8.3%)
학계의 연구실적 평가 등 연구윤리 관련 제도 개선	2 (8.3%)	0 (0.0%)	1 (4.2%)
대학원생 대상 연구윤리 과목 이수 필수화 또는 졸업을 위한 PF제 실시	1 (4.2%)	2 (8.3%)	0 (0.0%)
표준화된 연구윤리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8.3%)	4 (16.7%)	5 (20.8%)
연구윤리에 관한 국가적 정책조정기구(가칭 연구윤리정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1 (4.2%)	2 (8.3%)	0 (0.0%)
해외 연구윤리 선진 기관과의 국제적 교류협력 강화	0 (0.0%)	0 (0.0%)	0 (0.0%)

기관 연구윤리 전담인력(박사급) 양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0 (0.0%)	1 (4.2%)	0 (0.0%)
----------------------------------	----------	----------	----------

정부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력분야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의 경우는 교육대상별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이 및 보급이라 응답한 비율이 20.7%, 각종 책자 발간을 통해 국내·외 연구윤리 활동 소개라 답한 비율이 19.2%로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 협의체 운영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표준화된 연구윤리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9.3%로 동일한 비율로 높았다. 이에 반해 정부출연(연)의 경우는 교육대상별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보급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 협의체 운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6.7%로 동일하게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각종 책자 발간을 통해 국내·외 연구윤리 활동 소개라는 응답과 연구윤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12.5%로 동일하게 높았다.

〈그림 3-32〉 대학 및 정부출연(연)에서 바라는 정부의 연구윤리 활동



3-3. 일반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활동 실태 및 인식도 조사 분석 결과

- 조사 방법: 웹 설문 조사
- 조사 기간: 2012. 8. 23 ~ 2012. 09. 31.
- 조사 대상: 교수와 대학원생을 포함한 일반 연구자 232명

2012년에 최초로 실시한 일반 연구자 대상의 조사에서는 232명이 응답하여 당초 목표로 설정한 200명을 초과하였다.

1. 일반 연구자 신분 및 전공분야

1-1) 응답자 신분

<표 3-71> 일반 연구자 신분

일반 연구자 응답자 신분			
응답 수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232 (100.0%)	51 (22.0%)	40 (17.2%)	141 (60.8%)

일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신분은 교수가 22.0%, 석박사 학위를 소유한 연구원이 17.2%, 그리고 석 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이 60.6%이었다.

1-2) 일반 연구자 전공분야

<표 3-72> 일반연구자 응답자 전공 분야

응답자 전공 분야				
응답수	인문·사회과학	이·공학	의·생명과학	기타
232(100.0%)	105 (45.2%)	93 (40.1%)	32 (13.8%)	2 (0.9%)

일반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전공분야는 인문·사회분야가 45.2%, 이·공학분야가 40.1%, 그리고 의·생명과학분야가 13.8%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선정하였다.

2. 연구윤리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인식 조사

2-1) 정부가 2007년 제정한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존재 여부 인식

<표 3-73>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존재 인식 여부

응답 수	인식	미인식
232 (100.0%)	129 (55.6%)	103 (44.4%)

<표 3-74> 응답자 신분별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존재 인식 여부

	응답수	인식	미인식
교수	51	37 (72.6%)	14 (27.4%)
연구원	40	25 (62.5%)	15 (37.5%)
대학원생	141	67 (47.5%)	74 (52.5%)

정부가 2007년 제정한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해 일반 연구자의 55.6%가 그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 살펴보면 교수의 72.6%가 그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 연구원의 62.5%와 대학원생의 47.5%에 비교하여 높은 인식 비율을 나타내었다.

2-2) 연구윤리 지침 제4조에서 위·변조에 관한 정의 인지

<표 3-75> 위조와 변조에 관한 정의 인지 여부

응답 수	인지	미인지
232 (100.0%)	205 (88.4%)	27 (11.6%)

<표 3-76> 응답자 신분별 위조와 변조에 관한 정의 인지 여부

	응답수	인지	미인지
교수	51	49 (96.1)	2 (3.9%)
연구원	40	34 (85.0%)	6 (15.0%)
대학원생	141	121 (85.8%)	20 (14.2%)

일반 연구자의 88.4%가 위·변조에 관한 정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 살펴보면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모두 85%이상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수의 경우는 96.1%가 그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 연구원의 85.0%와 대학원생의 85.8%에 비교하여 높은 인식 비율을 나타내었다.

2-3) 연구윤리 지침 제4조에서 표절에 관한 정의 인지

<표 3-77> 표절에 관한 정의 인지 여부

응답 수	인지	미인지
232 (100.0%)	225 (97.0%)	7 (3.0%)

<표 3-78> 응답자 신분별 표절에 관한 정의 인지 여부

	응답수	인지	미인지
교수	51	51 (100.0%)	0 (0.0%)
연구원	40	39 (97.5%)	1 (2.5%)
대학원생	141	136 (96.5%)	5 (3.5%)

일반 연구자의 97.0%가 표절에 관한 정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의 경우는 100%가 표절의 정의를 인지하고 있으며 연구원과 대학원생도 97.5%와 96.5%의 매우 높은 비율로 표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연구윤리 지침 제 4조에서 부당한 논문저자에 관한 정의 인지

<표 3-79> 부당한 논문저자에 관한 정의 인지 여부

응답 수	인지	미인지
232 (100.0%)	201 (86.6%)	31 (13.4%)

<표 3-80> 응답자 신분별 부당한 논문저자에 관한 정의 인지 여부

	응답수	인지	미인지
교수	51	49 (96.1%)	2 (3.9%)
연구원	40	36 (90.0%)	4 (10.0%)
대학원생	141	116 (82.3%)	25 (17.7%)

일반 연구자의 86.6%가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관한 정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의 경우는 96.1%가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의 정의를 인지하고 있으며 연구원과 대학원생도 90.0%와 82.3%의 매우 높은 비율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연구윤리 지침 제 7조에서 자신의 연구결과 중복사용금지에 관한 지침 인지

<표 3-81> 중복사용에 관한 정의 인지 여부

응답 수	인지	미인지
232 (100.0%)	205 (88.4%)	27 (11.6%)

〈표 3-82〉 응답자 신분별 중복사용에 관한 정의 인지 여부

	응답수	인지	미인지
교수	51	49 (96.1%)	2 (3.9%)
연구원	40	36 (90.0%)	4 (10.0%)
대학원생	141	119 (84.4%)	22 (15.6%)

일반 연구자의 88.4%가 자신의 연구결과 중복사용금지에 관한 지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 살펴보면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모두 84% 이상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수의 경우는 96.1%가 그 지침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 연구원의 90.0%와 대학원생의 84.4%에 비교하여 높은 인식 비율을 나타내었다.

3. 소속 기관 연구윤리 인프라에 대한 인식 조사

3-1) 소속기관에서 연구윤리 업무 전담 부서, 또는 전담 인력의 필요 여부

〈표 3-83〉 연구윤리 전담 부서 및 인력 필요성 여부

응답 수	필요	불필요
232 (100.0%)	151 (65.1%)	81 (34.9%)

소속기관에서 연구윤리 업무 전담 부서, 또는 전담 인력의 필요 여부에 대해 일반 연구자의 65.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2) 소속 기관에서 연구윤리 제 분야에 대한 상담지원 또는 코디네이터의 지원 필요

〈표 3-84〉 연구윤리 상담지원 및 코디네이터에 관한 정의 인지 여부

응답 수	필요	불필요
232 (100.0%)	160 (69.0%)	72 (31.0%)

소속기관에서 연구윤리 제 분야에 대한 상담지원 또는 코디네이터의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일반 연구자의 69.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대한 인식 조사

4-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존재 여부 인식

<표 3-85> 연구노트 지침의 존재에 관한 인식 여부

응답 수	인식	미인식
232 (100.0%)	113 (48.7%)	119 (51.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일반 연구자의 48.7%가 지침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윤리지침에 대한 일반연구자의 인지 비율 55.6%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연구노트를 직접 작성하거나 혹은 작성 교육을 하고 있는지 여부

<표 3-86> 연구노트 직접 작성 혹은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여부

응답 수	하고 있음	하지 않음
232 (100.0%)	128 (55.2%)	104 (44.8%)

연구노트를 직접 작성하거나 혹은 작성 교육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일반 연구자의 55.2%가 연구노트를 직접 작성하거나 혹은 작성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에 대한 인식 조사

5-1)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존재여부 인지

<표 3-87>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에 관한 인지 여부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유형	응답 수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의 존재만 인지	68 (29.3%)
IRB(기관심의위원회) 존재만 인지	15 (6.5%)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와 IRB (기관심의위원회) 존재 모두 인지	51 (22.0%)
모두 인지하지 못함	98 (42.2%)
계	232 (100.0%)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존재여부 인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일반연구자의 경우는 존재여부에 대해 모두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4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존재에 대해서만 인지한 경우가 29.3%이었으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IRB의 존재 여부를 함께 인지한 경우는 22.0%로 나타났다.

5-2)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IRB 심의 여부

<표 3-88> IRB 심의 여부

응답 수	심의	미심의	해당사항 없음
232 (100.0%)	38 (16.4%)	27 (11.6%)	167 (72.0%)

IRB 심의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일반 연구자의 72.0%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지 않아 IRB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반연구자의 16.4%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IRB 심의를 받고 있으며 11.6%는 IRB 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3)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함에도 IRB의 심의 받지 않는 이유

<표 3-89>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이유

IRB 심의를 받지 않는 이유	응답 수
IRB에 대한 인식 부족	11 (40.7%)
소속된 기관의 IRB부재	10 (37.0%)
심의 받을 필요성 없음	5 (18.5%)
예산 부족	1 (3.7%)
기타	0 (0.0%)
계	27 (100.0%)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IRB의 심의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40.7%의 응답자가 IRB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소속기관에 IRB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조사

6-1) 연구 부정행위 경험, 목적 여부

<표 3-90> 연구부정행위 경험 혹은 목적 여부

응답 수	예	아니오
232 (100.0%)	49 (21.1%)	183 (78.9%)

〈표 3-91〉 응답자 신분별 연구부정행위 경험 혹은 목격 여부

	응답수	예	아니오
교수	51	23 (45.1%)	28 (54.9%)
연구원	40	12 (30.0%)	28 (70.0%)
대학원생	141	13 (9.2%)	128 (90.8%)

일반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부정행위 경험 및 목격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21.1%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은 78.9%로 나타났다. 응답자 신분별로 살펴보면 교수의 경우 45.1%가 연구 부정행위를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원의 경우는 30.0%가 대학원생의 경우는 9.2%가 연구 부정행위를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 부정행위의 종류(복수응답)

〈표 3-92〉 연구부정행위 종류

부정행위의 종류	응답 수
위조	3 (3.7%)
변조	5 (6.2%)
표절	26 (32.1%)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24 (29.6%)
자료 중복사용 혹은 중복게제	23 (28.4%)
계	81 (100.0%)

〈표 3-93〉 응답자 신분별 연구부정행위

부정행위 종류	응답수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위조	2	1	0
변조	3	2	0
표절	18	4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10	9	5
자료 중복사용 혹은 중복게제	14	3	6
계	47	19	15

연구 부정행위를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한 일반 연구자의 경우 그 부정행위의 종류는 표절이 3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29.6%,

자료의 중복사용이 2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신분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표절, 중복사용,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의 순으로 많은 응답이 있었으며, 연구원의 경우는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표절, 중복사용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대학원생의 경우는 자료의 중복 사용,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표절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6-3)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의 종류

<표 3-9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의 종류

종류	응답 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저자로 등재	20 (62.5%)
연구에 상당한 참여를 한 자가 저자로 등재되지 못함	2 (6.3%)
제 1저자의 자리가 부당하게 배정됨	10 (31.2%)
계	32 (100.0%)

<표 3-95> 응답자 신분별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의 종류

종류	응답수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저자로 등재	10	8	2
연구에 상당한 참여를 한자가 저자로 등재되지 못함	1	1	0
제 1저자의 자리가 부당하게 배정됨	4	1	1
계	15	10	3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를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한 경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저자로 등재한 경우가 6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제1저자의 자리가 부당하게 배정된 경우가 3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에 상당한 참여를 하였으나 저자에서 제외된 경우는 극히 적어 교수 1건 연구원 1건으로 모두 2건으로 조사되었다.

6-4)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 방법 인지 여부

<표 3-96>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 방법 인지 여부

응답 수	인지	미인지
232 (100.0%)	52 (22.4%)	180 (77.6%)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 방법에 대한 인지여부 조사에서 일반 연구자의 대부분인 77.6%가 신고 접수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22.4%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 홈페이지 개설 필요

〈표 3-97〉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 홈페이지 개설 필요성 여부

응답 수	필요	불필요
232 (100.0%)	188 (81.0%)	44 (19.0%)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 홈페이지 개설 필요에 대한 조사에서 일반 연구자의 대부분인 81.0%가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19.0%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많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표 3-98〉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적은 이유

이유	응답 수
소속기관이 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93 (25.3%)
소속기관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77 (21.0%)
신뢰하고 제보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104 (28.3%)
제보를 하더라도 개선될 여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78 (21.3%)
기타	15 (4.1%)
계	367 (100.0%)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많지 않은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모든 질의 항목에 고르게 응답하였다. 즉 제보를 많이 하지 않은 이유로는 소속기관이 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속기관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뢰하고 제보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보를 하더라도 개선될 여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등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부정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예, 자기표절),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다 연구윤리가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인지를 인지 못해서, 부정행위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등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연구윤리교육에 대한 조사

7-1) 연구윤리 관련 교육 필요 여부

<표 3-99> 연구윤리 관련 교육 필요성 여부

응답 수	필요	불필요
232 (100.0%)	222 (95.7%)	10 (4.3%)

<표 3-100> 응답자 신분별 연구윤리 관련 교육 필요성 여부

	응답수	예	아니오
교수	51	49 (96.1%)	2 (3.9%)
연구원	40	40 (100.0%)	0 (0.0%)
대학원생	141	133 (94.3%)	8 (5.7%)

일반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관련 교육의 필요성 조사에서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인 95.7%가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연구원의 경우는 100%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교수의 96.1%와 대학원생의 94.3%가 연구윤리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7-2)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표 3-101>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응답 수	경험	무경험
232 (100.0%)	132 (56.9%)	100 (43.1%)

<표 3-102> 응답자 신분별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응답수	경험	무경험
교수	51	31 (60.8%)	20 (39.2%)
연구원	40	22 (55.0%)	18 (45.0%)
대학원생	141	79 (56.0%)	62 (44.0%)

일반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관련 교육 경험 여부 조사에서 응답자의 56.9%가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응답자의 43.1%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의 경우 응답자의 60.8%가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구원과 대학원생의 경우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각각 55.0%와 56.0%로 나타났다.

7-3) 최근 3년간 받은 연구윤리 관련교육 횟수

<표 3-103> 최근 3년간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받은 횟수

교육 횟수	응답 수
-------	------

1회	66 (50.0%)
2~3회	44 (33.3%)
4~6회	9 (6.8%)
7회 이상	6 (4.6%)
일정 주기를 정해 지속적으로 받음	7 (5.3%)
계	132 (100.0%)

최근 3년 동안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일반 연구자중 대부분은 1회 (50.0%) 혹은 2회 (33.3%) 교육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7-4) 이수한 연구윤리교육 형태

<표 3-104> 이수한 연구윤리 관련 교육의 형태

연구윤리교육 형태	응답 수
정규 학과목	49 (37.1%)
특강 및 워크숍	67 (50.8%)
온라인(인터넷)강의	10 (7.6%)
기타(홍보자료 제작 배포 등)	6 (4.5%)
계	132 (100.0%)

최근 3년 동안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일반 연구자들이 이수한 연구윤리교육 형태로는 특강 및 워크숍이 5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규 학과목을 통한 교육 이수가 37.1%이었으며 온라인 교육은 7.6%로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

7-5) 이수한 연구윤리 관련 교육의 내용(복수응답)

<표 3-105> 이수한 연구윤리 관련 교육의 내용

내용	응답 수
데이터의 획득 및 관리, 위조 및 변조	108 (18.9%)
표절 및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120 (21.0%)
바람직한 실험실 문화	55 (9.5%)
인간 및 동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켜야 할 윤리(IRB 규정 포함)	53 (9.3%)
연구노트	77 (13.5%)
논문 작성법(인용법 포함) 및 논문 투고	83 (14.5%)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76 (13.3%)
계	572 (100.0%)

최근 3년 동안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일반연구자 중 이수한 연구윤리교육의 내용으로는 표절 및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등이 2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의 획득 및 관리, 위조 및 변조가 18.9%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논문 작성법(인용법 포함) 및 논문 투고,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노트 교육이 고루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6) 이수한 연구윤리교육에 대한 만족도

<표 3-106> 연구윤리 관련 교육에 대한 만족도

응답 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132 (100.0%)	17 (12.9%)	76 (57.6%)	38 (28.8%)	1 (0.8%)	0 (0.0%)

<표 3-107> 응답자 신분별 연구윤리 관련 교육에 대한 만족도

	응답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교수	31	2 (6.4%)	22 (71.0%)	7 (22.6%)	0 (0.00%)	0 (0.00%)
연구원	22	2 (9.1%)	12 (54.5%)	8 (36.4%)	0 (0.00%)	0 (0.00%)
대학원생	79	13 (16.5%)	42 (53.2%)	23 (29.1%)	1 (1.2%)	0 (0.00%)

최근 3년 동안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일반 연구자중 이수한 연구윤리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며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대체로 만족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12.9%와 57.6%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불만족과 대체로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7) 연구윤리 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

<표 3-108> 연구윤리 관련 교육에 대한 만족도

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	응답 수
강사의 전문성 부족	1 (100.0%)
교육내용의 부실	0 (0.0%)

교육내용이 특화되지 않아서	0 (0.0%)
교육환경의 열악	0 (0.0%)
계	응답수 : 1 (100.0%)

연구윤리 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강사의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7-8) 연구윤리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

<표 3-109> 연구윤리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

교육 받지 못한 이유	응답 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6 (21.1%)
소속된 기관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제공하지 않아서	52 (42.3%)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윤리교육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서	45 (36.6%)
계	응답수 : 123 (100%) 복수응답:123 응답인원: 100

연구윤리 교육을 받지 못한 응답자의 경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이유로는 소속된 기관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42.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윤리교육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36.6%였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21.1%로 그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7-9) 연구윤리 교육의 필수화 필요성 여부

<표 3-110> 연구윤리 교육의 필수화 필요성

응답 수	예	아니오
232 (100.0%)	208 (89.6%)	24 (10.3%)

연구윤리 교육의 필수화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일반연구자의 대부분인 89.6%가 그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7-10) 연구윤리 교육 필수화의 시기

〈표 3-111〉 연구윤리 교육 필수화의 시기

교육 시기	응답 수
초등학교	31 (14.9%)
중등학교	42 (20.2%)
대학교	105 (50.5%)
대학원	30 (14.4%)
계	응답인원 : 208 (100%)

연구윤리 교육의 필수화의 시기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교부터 연구윤리 교육을 필수화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등학교 20.2%, 초등학교 14.9%, 그리고 대학원 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7-11) 연구윤리 교육 필수화의 적절한 방법

〈표 3-112〉 연구윤리 교육 필수화의 적절한 방법

교육 필수화시 적절한 방법	응답 수
연구윤리 과목의 학점 이수	99 (47.6%)
연구윤리 과목의 PF 제	57 (27.4%)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이수	50 (24.0%)
지도교수의 확인서	2 (1.0%)
계	응답인원 : 208 (100%)

연구윤리 교육의 필수화의 적절한 방법에 대한 조사에서 연구윤리과목의 학점이수에 대한 응답이 47.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구윤리과목의 PF제 27.4%, 그리고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이수 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7-12) 연구윤리교육 불필요 사유

〈표 3-113〉 연구윤리 교육 불필요 사유

연구윤리교육 불필요 사유	응답 수
연구윤리교육을 필수로 할 만큼 중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으므로	2 (8.3%)
연구윤리교육의 효과가 미미할 것 같아서	1 (4.2%)
연구윤리에 대한 것은 스스로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으므로	20 (80.3%)
연구윤리교육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0 (0.0%)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적합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1 (4.2%)
계	응답인원 : 24 (100%)

연구윤리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이유는 연구윤리에 대한 것은 스스로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응답이 80.3%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연구윤리교육을 필수로 할 만큼 중요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7-13)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 여부

<표 3-114>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 필요성 여부

응답 수	예	아니오
232 (100.0%)	192 (82.8%)	40 (17.2%)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인 82.8%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8. 연구윤리정보센터(Center for Research Ethics, CRE)에 대한 인식조사

8-1) 연구윤리정보센터 인지

<표 3-115> 연구윤리정보센터 인지 여부

응답 수	예	아니오
232 (100.0%)	47 (20.3%)	185 (79.7%)

<표 3-116> 응답자 신분별 연구윤리정보센터 인지 여부

	응답수	예	아니오
교수	51	23 (45.1%)	28 (54.9%)
연구원	40	9 (22.5%)	31 (77.5%)
대학원생	141	16 (11.4%)	125 (88.6%)

연구윤리정보센터에 대한 인지여부 조사에서 일반 연구자의 79.7%가 그 존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좋은 연구 (GRP) 사이트가 연구윤리정보센터로 개편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지도가 아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연구개발 인력교육원에서 수행하는 찾아가는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윤리정보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어 조만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정보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33〉 연구윤리 정보센터 홈페이지



8-2) 연구윤리정보센터 이용 경험

〈표 3-117〉 연구윤리정보센터 이용 경험

응답 수	예	아니오
230 (100.0%)	25 (10.9%)	205 (89.1%)

연구윤리정보센터에 대한 이용 경험 여부 조사에서 일반 연구자의 10.9%만이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이는 연구윤리정보센터의 인지 여부 비율 20.3% 보다도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8-3) 연구윤리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것

〈표 3-118〉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것	응답 수
올바른 연구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제시	65 (28.1%)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자료 제공	35 (15.1%)
연구자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교류	14 (6.1%)
연구윤리 동향 및 새로운 정보 제공	22 (9.5%)
연구윤리 관련 상담 및 자문 활동	71 (30.7%)
연구윤리 관련 제 규정 및 정책 소개	24 (10.5%)
계	응답인원 : 231 (100%)

연구윤리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항목에 대한 조사에서 일반연구자들은 연구윤리 관련 상담 및 자문 활동을 30.7%의 가장 높은 비율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올바른 연구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제시를 28.1%와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자료 제공을 15.1%의 비율로 응답하였다. 현재 연구윤리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연구윤리소개, 연구부정행위, 논문 출판 및 지식 재산권 관리, 데이터 관리, 생명윤리,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공동연구 계약, 실험실 생활, 연구윤리 정책 및 규정, 국내외 소식, Q&A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연구자간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교류 부분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8-4) 연구윤리 정보센터에서 가장 보충해야할 분야

<표 3-119> 연구윤리정보센터가 보충해야 할 서비스 분야

센터에서 가장 보충해야할 분야	응답 수
연구윤리 관련 자료실 운영	63 (27.2%)
지식게시판	8 (3.4%)
연구윤리교육 콘텐츠 확보	58 (25.0%)
국내외 소식 등 최신정보	33 (14.2%)
Q&A	42 (18.1%)
연구자 간 커뮤니티	28 (12.1%)
계	응답인원 : 232 (100%)

연구윤리 정보센터에서 가장 보충해야할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 일반연구자들은 연구윤리관련 자료실 운영을 27.2%의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연구윤리 교육 콘텐츠 확보를 25.0%의 비율로 응답하였다. 현재 연구윤리 정보센터에서 연구윤리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9.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정부의 활동 및 계획에 대한 인식 조사

9-1) 정부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펼친 노력들에 대한 평가

<표 3-120> 정부의 연구윤리 확립활동에 대한 평가

	매우 만족 한다	대체로 만족 한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불만족 한다	매우 불만족 한다	총계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11년 6월 개정) 및 ‘연구윤리 확 립을 위한 권고문’ 제시, 학위논문 대필 근절대책 수립(2010. 6. 28) 등 각종 책자 발간을 통해 국내·외 연구윤리활동 소개(연구윤리소개, 외국대학의 연구윤리 확립활동 사 례 등)	7 (3.0%)	15 (6.5%)	90 (39.0%)	98 (42.4%)	21 (9.1%)	231 (100%)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대학의 연구 윤리 활동 지원(연구자 개인 및 학 회 대상 GRP 연구 및 교육활동 지 원)	8 (3.5%)	18 (7.9%)	101 (44.3%)	83 (36.4%)	18 (7.9%)	228 (100%)
올바른 연구수행 논의를 위한 연구 윤리 포럼 (학술단체총연합회 주관) 및 전시회 개최	7 (3.1%)	19 (8.4%)	109 (48.2%)	73 (32.3%)	18 (8%)	226 (100%)
연구윤리 정보센터 포털사이트 ‘좋은 연구’ 구축(2012. 3 center for research ethics로 개편) 및 다 양한 정보 제공	8 (3.5%)	13 (5.7%)	93 (40.8%)	86 (37.7%)	28 (12.3%)	228 (100%)
연구윤리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정 책 연구과제 추진 (연구노트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논문 유사도 검색 시스템 시범 구축 등)	6 (2.6%)	24 (10.5%)	85 (37.1%)	94 (41.0%)	20 (8.8%)	229 (100%)
연구윤리교육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대상 (교수, 연구기관, 대학원생) 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 실시	9 (3.9%)	21 (9.1%)	97 (42.0%)	86 (37.2%)	18 (7.8%)	229 (100%)

정부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펼친 노력들에 대한 평가에서 일반연구자들은 조사 전 항목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2) 정부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분야 중 강화되어야 하는 사항

<표 3-121> 정부의 연구윤리 확립활동 중 강화되어야 할 사항

	1 순위	2 순위	3 순위	4순위	5순위
--	------	------	------	-----	-----

각종 책자 발간을 통해 국내외 연구 윤리 활동 소개	37 (15.7%)	13 (5.7%)	7 (3.0%)	9 (3.9 %)	17 (7.4%)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대학·학회·정부출연의 연구 윤리 활동 지원 사업	15 (6.5%)	16 (7.0%)	8 (3.5%)	12 (5.2%)	10 (4.3%)
올바른 연구수행의 문화 정립을 위한 연구윤리 포럼 전시회 개최	10 (4.3%)	12 (5.2%)	15 (6.5%)	13 (5.7%)	11 (4.8%)
대학 및 정부 출연의 연구 윤리 업무 담당자 협의체 운영	15 (6.5%)	12 (5.2%)	16 (7.0%)	12 (5.2%)	10 (4.3%)
대학·학회·정부출연의 연구윤리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9 (3.9%)	13 (5.7%)	16 (7.0%)	18 (7.8%)	15 (6.5%)
교육대상(교수, 연구기관, 대학원생)별 맞춤형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및 보급	22 (9.6%)	21 (9.1%)	11 (4.8%)	14 (6.1%)	19 (8.3%)
기관 연구진실성 검증 실무(책임)자 협의체 운영	2 (0.9%)	6 (2.6%)	8 (3.5%)	9 (3.9 %)	12 (5.2%)
연구진실성 검증 실무(책임)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	8 (3.5%)	13 (5.7%)	17 (7.4%)	21 (9.1%)	20 (8.7%)
연구윤리정보센터 포털 사이트 운영의 고도화	2 (0.9%)	11 (4.8%)	12 (5.2 %)	12 (5.2%)	12 (5.2%)
학계의 연구실적 평가 등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26 (10.9%)	24 (10.0%)	24 (10.0%)	17 (7.4%)	20 (8.7%)
대학원생 대상 연구윤리 과목 이수 필수화 또는 졸업을 위한 PF제 실시	17 (7.4%)	19 (8.3%)	21 (9.1%)	25 (10.4%)	15 (6.5%)
표준화된 연구윤리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 (4.8%)	14 (6.1%)	17 (7.4%)	19 (8.3%)	14 (6.1%)
석·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체계 확립	24 (10.4%)	27 (11.7%)	33 (13.9%)	25 (10.4%)	6 (2.6%)
해외 연구윤리 선진 기관과의 국제적 교류 협력 강화	1 (0.4%)	5 (2.2%)	6 (2.6%)	3 (1.3 %)	23 (9.6%)
연구윤리 준수 시스템 확립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33 (14.3%)	25 (10.4%)	21 (9.1%)	23 (10.0%)	28 (11.7%)

정부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분야 중 강화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일반연구자들은 각종 책자발간을 통한 국내외 연구윤리 활동소개가 15.7%의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는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과 석·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체계 확립에 대해 10.9%와 10.4%의 비슷한 비율로 높게 응답하였다.

10. 연구윤리에 관한 국가적 정책조정기구의 설립에 대한 인식 조사

10-1) 필요성에 대한 조사

<표 3-122> 국가적 연구윤리 정책조정기구의 설립에 대한 인식

연구윤리에 관한 정책조정기구의 설립	응답 수
---------------------	------

별도의 독립 기구를 설립해야	82 (35.3%)
별도의 독립 기구의 설립은 아직 시기 상조	26 (11.2%)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설치해야	45 (19.4%)
한국연구재단 내에 설치해야	69 (29.7%)
민간 학술단체 내에 설치해야	7 (3.0%)
기타	3 (1.2%)
계	232 (100%)

연구윤리에 관한 국가적 정책조정기구의 설립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별도의 독립기구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3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한국연구재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응답과 교육과학기술부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29.7%와 19.4%의 비율로 나타났다.

10-2) 국가적 정책조정기구 주요기능으로 가장 중요한 것

<표 3-123> 국가적 연구윤리 정책조정기구의 주요기능

	1 순위	2 순위	3 순위	4순위	5순위
연구윤리에 관한 종합적 정책 수립	113 (48.7%)	24 (10.4%)	18 (7.8%)	15 (6.5%)	30 (13.0%)
바람직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윤리 관련 제도와 규정의 마련 및 개선	49 (20.9%)	86 (37.0%)	28 (12.2%)	12 (5.2%)	18 (7.8%)
각 연구기관이 요청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최종적 심의 및 판단	25 (10.9%)	44 (18.7%)	49 (20.9%)	19 (8.3%)	17 (7.4%)
대학, 정부출연(연) 등 연구기관의 연구윤리준수 여부 평가	13 (5.7%)	22 (9.6%)	36 (15.2%)	39 (7.0%)	16 (7.0%)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14 (6.1%)	21 (9.1%)	32 (13.9%)	43 (18.3%)	40 (17.0%)
연구윤리 전문가 양성 및 지원	5 (2.2%)	15 (6.5%)	29 (12.6%)	38 (16.5%)	32 (13.9%)
연구윤리 관련 제 상담 및 코디네이터 지원	10 (4.3%)	11 (4.8%)	28 (12.2%)	48 (20.4%)	41 (17.4%)
해외 연구윤리 선진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윤리 확립	3 (1.3%)	9 (3.9%)	12 (5.2%)	18 (7.8%)	38 (16.5%)

연구윤리에 관한 국가적 정책조정기구의 주요기능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는 연구윤리에 관한 종합적 정책 수립이 48.7%의 비율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바람직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윤리 관련 제도와 규정의 마련

및 개선이 20.9%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각 연구기관이 요청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최종적 심의 및 판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9%의 비율로 나타났다.

11. 연구윤리 전담인력(박사급) 양성 및 운용지원 하는 정부 지원사업의 필요 여부

<표 3-124> 연구윤리 전담인력 양성 및 운용 지원 사업 필요성

연구윤리 전담인력 양성 및 운용지원 사업의 필요성 여부	응답 수
매우 그렇다	51 (22.0%)
그렇다	62 (26.7%)
보통이다	90 (38.8%)
필요하지 않다	22 (9.5%)
매우 필요하지 않다	7 (3.0%)
계	응답인원 : 232 (100%)

연구윤리 전담인력(박사급) 양성 및 운용지원 하는 정부 지원사업의 필요 여부에 대해 58.7%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단지 12.5%의 응답자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3-4. 우리나라 연구윤리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2008, 2010, 2012)

1) 조사 대상 및 응답률

2012년 연구윤리활동 실태조사의 응답률을 2008년과 2010년의 실태조사 응답률과 비교하면 대학의 경우 2012년의 응답률이 81.4%로 이는 2008년의 응답률 52.9%에 비교하면 높지만 2010년의 응답률 90.7%에 비교하면 낮다. 그러나 특히 이공계의 대학원 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들 대부분은 설문에 응답하였고 응답을 하지 않은 대학은 대부분 종교계 대학들 혹은 대학원 대학들 이었다. 정부출연(연)의 경우는 2012년의 응답률이 90.6%로 이는 2008년의 응답률 80.6%에 비교하면 높지만 2010년의 응답률 97.6%에 비교하면 낮다. 조사대상이 2010년의 41개에서 32개로 축소되었음에도 3개 기관이 응답하지 않았다.

<표 3-125> 연도별 응답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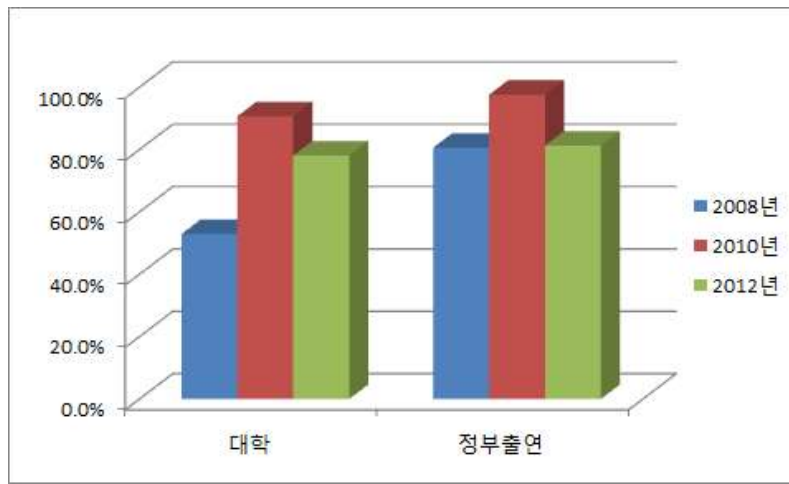
연도	대학		정부출연(연)	
	조사 대상 수	응답 수 (응답률)	조사 대상 수	응답 수 (응답률)

2008년	249	136(52.9%)	36	29(80.6%)
2010년	237	215(90.7%)	41	40(97.6%)
2012년	237	193(81.4%)	32	29(90.6%)

*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대학원 대학, 원격 대학 등 포함)

*정부출연(연)의 경우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함

〈그림 3-34〉 연도별 응답률 현황



2) 설문조사 기간

2012년 연구윤리활동 실태조사의 설문조사기간은 응답률 향상을 위하여 70일간 실시하였는데 이는 2008년과 2010년의 설문조사기간인 20일과 48일에 비해 확대된 기간이었다.

〈표 3-126〉 연도별 설문조사 기간

연도	설문조사 기간	비고
2008년	2008. 8. 20 ~ 2008. 9. 8	20일간
2010년	2010. 8. 1 ~ 2010. 9. 17	48일간
2012년	2012. 8. 23 ~ 2010. 10. 31	70일간

3)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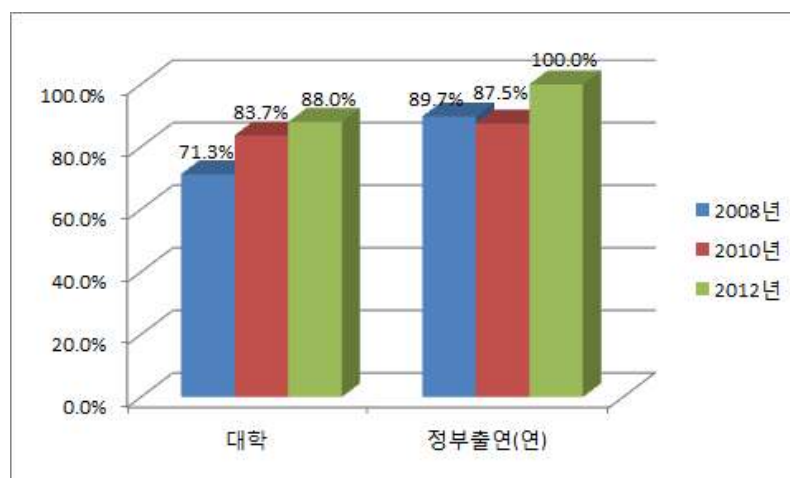
대학과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의 보유 여부를 비교해 보면, 대학의 경우 2006년 71.3%에서 2010년 83.7%로 2012년 88.0%로 그 보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정부출연(연)의 경우는 2008년 89.7%에서 2010년에는 조사 대상 기관의 확대와 더불어 87.5%로 그 보유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기관의 축소에 따라 그 보유율이 100%로 증대되었다. 이를 통해 대학, 정부출연(연)에서 연구윤리 관련 규정 혹은 지침의 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3-127> 연도별 연구윤리관련 규정 및 지침 제정 현황

연도	대학		정부출연(연)	
	제정	미제정	제정	미제정
2008	71.3%	28.7%	89.7%	10.3%
2010	83.7%	16.3%	87.5%	12.5%
2012	87.0%	13.0%	100.0%	0%

<그림 3-35> 연도별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지침 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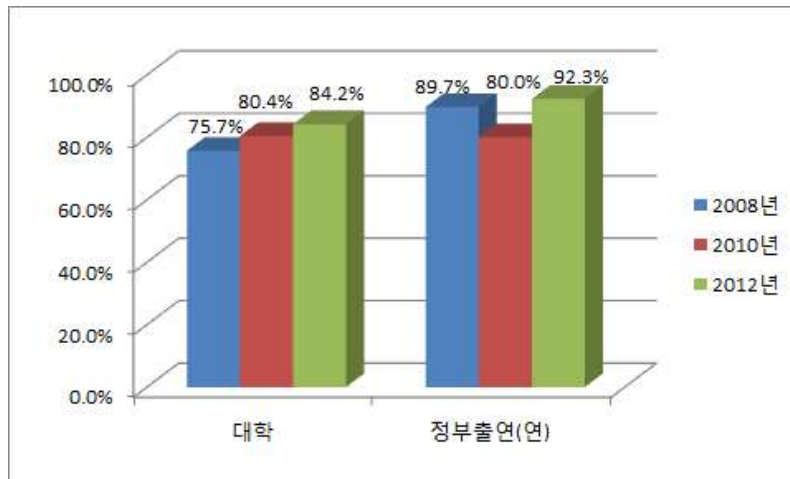
4)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대학이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및 기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 75.7%에서 2010년 80.4%로 소폭 증가한 바 있고 2012년에는 그 비율이 83.4%로 소폭 추가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출연(연)의 경우는 2008년 89.7%에서 2010년 조사기관의 확대에 의해 80.0%로 그 보유율은 조금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는 조사기관의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 보유비율이 93.1%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및 정부출연(연)에서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및 기관심의위원회)의 설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3-128〉 연도별 연구윤리관련 위원회 설치 현황

연도	대학		정부출연(연)	
	전체	있음	전체	있음
2008	136(100.0%)	103(75.7%)	29(100.0%)	26(89.7%)
2010	215(100.0%)	173(80.4%)	40(100.0%)	32(80.0%)
2012	193(100.0%)	161(83.4%)	29(100.0%)	27(93.1%)

〈그림 3-36〉 연도별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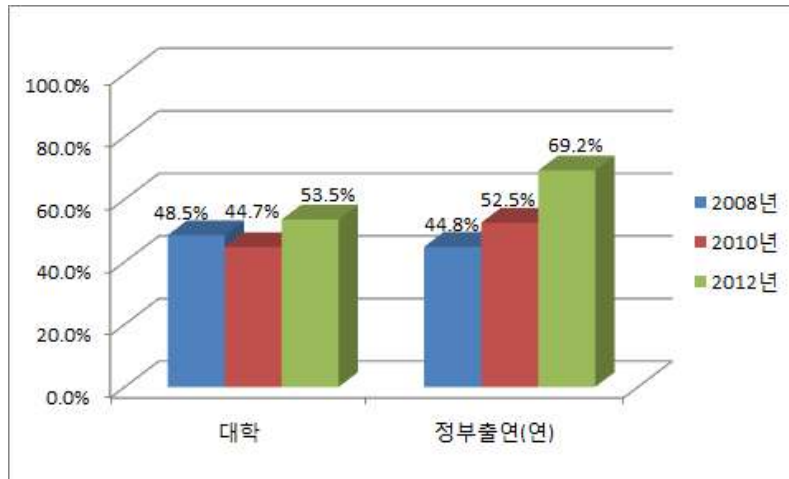
5) 연구윤리 관련 부서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부서의 설치 비율은 2008년 48.5%에서 2010년 44.7%로 조사대상 대학의 증가로 그 비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51.8%로 소폭 증가하였다.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관련 부서의 설치 비율은 2008년 44.8%에서 2010년 52.5%로 소폭 증가하였고 이번의 2012년 조사에서도 72.4%로 소폭 증가하였다. 대학과 정부출연(연)이 연구윤리 관련 부서를 두지 않는 비율이 여전히 47.5%와 27.6%로 높은 이유는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혹은 특별 조사위원회에서 연구윤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129〉 연도별 연구윤리 관련 부서 설치 현황

연도	대학		정부출연(연)	
	전체	있음	전체	있음
2008	136(100.0%)	66(48.5%)	29(100.0%)	13(44.8%)
2010	215(100.0%)	96(44.7%)	40(100.0%)	21(52.5%)
2012	193(100.0%)	100(51.8%)	29(100.0%)	21(72.4%)

〈그림 3-37〉 연도별 연구윤리 관련 부서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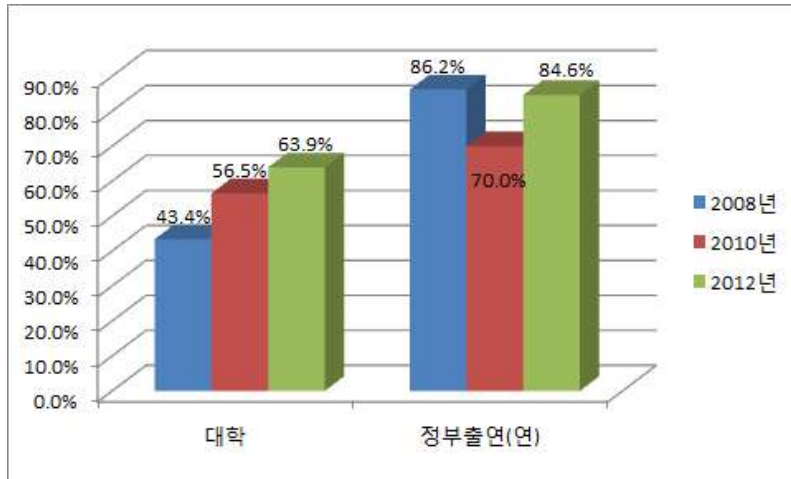
6) 연구윤리 관련 교육

연구윤리 관련 교육 시행 여부에 관하여 비교해 보면, 대학의 경우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2008년 43.4%에서 2010년에는 그 비율이 56.5%로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그 비율이 다시 63.7%로 증가하였다. 정부출연(연)의 경우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정부출연(연)의 비율이 2008년 86.2%에서 2010년 조사 대상의 확대로 70.0%로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금번 2012년의 경우는 조사 대상 축소에 따라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비율이 86.2%로 2008년의 조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 대학의 경우는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출연(연)의 경우는 워낙 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아 그 비율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30〉 연도별 연구윤리 관련 교육 실시 현황

연도	대학		정부출연(연)	
	전체	있음	전체	있음
2008	136(100.0%)	59(43.4%)	29(100.0%)	25(86.2%)
2010	215(100.0%)	121(56.5%)	40(100.0%)	28(70.0%)
2012	193(100.0%)	123(63.7%)	29(100.0%)	25(86.2%)

〈그림 3-38〉 연도별 연구윤리 관련 교육 시행 현황



3-5. 향후 우리나라 연구윤리확립을 위한 정책 과제 수립에 대한 요구 또는 시사점

- 2007년 이후 연구윤리에 대한 각 기관의 인식 제고와 정부의 노력으로 각 기관의 연구윤리관련 규정의 제정 비율이 매년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대학의 87.0%와 정부출연(연) 100%가 연구윤리 관련 지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개정된 정부의 연구윤리 관련 지침을 반영하여 개정된 비율이 대학의 20.2%와 정부출연(연) 27.6% 정도로 매우 낮으므로 정부에서는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지침 개정에 관한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연구 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한 대학과 정부출연(연)의 비율이 68.3%와 84.6%로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 비해서는 다소 낮으나 2010년에 비해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대학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규정·지침 제정 이유는 주로 연구진실성 검증과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연구기관이 연구 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의 경우 연구노트 관련 규정의 제정 비율이 68.3%로 낮은 이유는 확실적인 노트 작성 방법에 대한 연구자들의 거부감이나 현행 규정의 비강제성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연구노트를 사용하는 분야가 주로 이공계이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구노트 규정이 또한 이공계 위주로 제정되어 있다. 현재의 연구노트 관련 규정은 지적 재산권 보호 측면을 염두에 두고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노트 규정에 담고 있는 연구노트의 작성 방법, 보존 기간, 보존 주체 등의 항목이 인문 사회

계 분야는 물론이고 지적재산권 확보를 목표로 하지 않는 이공계 분야 조차에서도 연구노트 규정을 대학 현장에서 준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연구노트 작성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만 제공하고 자율성을 높인다든지, 응용개발연구에서 강제성을 높인다든지 하여 보다 더 현실적인 연구노트 규정 혹은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설치 유형을 조사한 결과 대학의 경우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만 설치된 경우가 6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IRB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연)의 경우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만 설치된 경우가 69.0%로 가장 많았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IRB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곳은 17.2%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IRB의 경우는 생명과학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인문사회계열의 경우도 IRB가 필요하므로 향후 정부차원에 이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RB의 기능에 대한 조사결과 대학과 정부출연(연) 모두에서 연구계획서의 과학성과 윤리성 심의 및 승인,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동의서 및 동의 과정 심의, 승인된 연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을 고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IRB는 주로 의학, 생명과학, 심리학 관련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언어학, 사회학 등의 인문사회계 분야에서도 IRB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IRB를 구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IRB 규정은 의학 혹은 생명과학 관련 분야에만 적용되도록 제정되어 있어 정부에서는 인문사회 분야의 IRB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 윤리 진실성위원회의 개최 횟수도 연구윤리사건 조사의 증대와 더불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사건은 인문사회계의 경우는 표절, 자료의 중복사용(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가 주로 문제가 되었으며 이공계열의 경우 위·변조, 표절, 자료의 중복게재 등이 주로 문제가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면했던 어려움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과 정부출연(연) 모두 조사 항목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조사위원회 구성과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판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기준이 상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표절과 중복게재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학문 분야 별로 매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유사영역을 통합하고, 그 분야에 전문가를 선발하여, 각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규정과 지침을 만들 수 있는 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각 분야의 사례를 모아 정리하고, 각 대학이나 학회 단체 등에서 수월하게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윤리 사건의 증대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노력이 매년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주로 홍보자료 배부, 특강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교육이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기관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예산부족, 강사부족, 교육 자료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보다 더 연구윤리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기관과 정부가 연구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대학에서의 연구윤리 교육은 그 어느 기관에서의 연구윤리 교육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최근 소수의 대학이 효율적인 연구윤리 교육의 한 방안으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서버 시스템의 운영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을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학에서의 연구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해 모든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윤리 교육을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과 더불어 대학에서의 정규 학과목 개설과 같은 오프라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윤리 만으로 학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으므로, 교양강좌나 방법론, 논문작성 등 다른 강좌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각 기관이 오프라인의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이 연구윤리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를 확보하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 연구개발교육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수요자들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각 기관이 느끼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적절한 연구윤리 교재의 선택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국내에는 이미 소수의 연구윤리 관련 교재가 출판되었으나 학문의 특성을 반영하고 국내외 연구부정행위의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연구부정행위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교재의 출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내의 연구 부정행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학문 분야의 특성에 맞게 연구 윤리를 다루는 교재의 출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재처럼 교습방법도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연구윤리 교육 교재와 교습법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경주 할 필요가 있다.

- 그동안 각 기관이 수행한 연구윤리 활동에 대한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 대학과

학회의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제반 규정 제정에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이 높으나 연구윤리 교육에서는 불만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출연(연)의 경우는 모든 분야에서 고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펼친 노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학과 정부출연(연)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침의 제정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으나 기관에 대한 연구윤리 활동 지원사업 및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 강화가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윤리 활동 경비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 학회, 정부 출연(연) 모두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그 비용 또한 1000만원 내외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비는 연구윤리 교육 및 연구진실성 검증에 고루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의 현재 예산 규모로는 효과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연구윤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자료 보급 및 연구윤리 교육자 양성과 더불어 각 기관에서 연구윤리 활동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을 프로그램 공모 형식을 통해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 록

1. 2012년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분석을 위한 설문지

1) 대학

2012년 국내 연구윤리 활동 조사·분석을 위한 설문 안내

각 대학의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정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007. 2)과 “연구노트 관리 지침” (2007. 12)의 제정, 제1차 연구윤리확립 종합추진계획(2010-2012)의 수립과 실천, 연구윤리정보센터의 운영, 연구자 대상 연구윤리교육 실시 등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연구윤리 활동 지원 사업을 활발히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격년으로 대학 및 정부 출연(연)을 대상으로 연구윤리활동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활동에 관한 성과와 연구 현장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연구윤리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되는 정기 조사에서도 정확한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번거롭겠지만 귀 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 조사는 대학과 정부출연(연)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이므로 각 기관의 담당자 1인이 대표로 설문에 참여하면 됩니다. 본 설문 조사는 2012년 8월 23일부터 9월 5일 까지 2주 동안 실시되며, 웹상(<http://agency.wsurvey.net/survey/answer.php?sidx=819>) 에서 진행됩니다. 질문 항목이 많으니 먼저 공문을 통해 보내드린 설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정확하고 충분히 확보한 후 설문에 빠짐없이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겠습니다.

본 실태 조사는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연구과제(연구책임자: 서울교육대학교 이인재 교수)의 일환으로 공동연구원인 연세대학교 이원용 교수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하는 중에 의문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공동연구원 이원용 (02-2123-2649, wylee@yonsei.ac.kr),

*연구조원 이상정 (02-2123-4277, rubisj0723@gmail.com)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2012년 8월

■ 대학 일반 사항

1. 대학명 : ()

■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실태 조사

1.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에 대한 조사입니다.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이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혹은 각 연구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제정한 연구윤리지침 등을 말합니다)

※ 연구윤리 관련 제반 규정·지침이 있는 경우 ➡ 1-1번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연구윤리 관련 제반 규정·지침이 없는 경우 ➡ 1-2번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1-1.

1)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의 제정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2007년 이전 () ② 2007년 () ③ 2008년 () ④ 2009년 ()
⑤ 2010년 () ⑥ 2011년 () ⑦ 2012년 ()

2) 정부는 2011년 6월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연구논문 작성 시 자신이 이전에 발표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사용하며, 이전 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하여 연구성과·업적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둘째,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명시하기 위해 검증시효기간 5년을 삭제하는 것과,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비율을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귀 대학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귀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 지침을 개정하였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1-2.

1) 귀 대학에서는 연구윤리 규정·지침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2. 연구노트 관련 규정에 대한 조사입니다.

2-1. 귀 대학은 정부가 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 지침”(2007. 12)에 따라 연구 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침을 마련했습니까?

- ① 예 () ➡ 1)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아니오 () ➡ 2-2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규정·지침이 있다면 그 제정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2007년 이전 () ② 2007년 () ③ 2008년 () ④ 2009년 ()
)
 ⑤ 2010년 () ⑥ 2011년 () ⑦ 2012년 ()

2-2. 귀 대학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규정·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3.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에 대한 조사입니다.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란 연구의 윤리성을 제고하거나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 형	기 능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연구의 부정행위와 부적절한 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 담당
기관심의위원회 (IRB)	인문·사회·과학분야, 의·생명분야 등 전 학문 분야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관심의위원회 <예,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

※ 대학에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3-1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IRB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3-2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 3-1, 3-2 질문에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에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 3-3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1) 설치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2007년 이전 () ② 2007년 () ③ 2008년 () ④ 2009년 ()
⑤ 2010년 () ⑥ 2011년 () ⑦ 2012년 ()

2) 위원회 구성 형태는 어떠합니까?

- ① 대학 내부 인사로만 구성 ()
② 대학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로 구성 ()
③ 기타 ()

3) 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 ()
② 연구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 ()
③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 ()
④ 기타 ()

4) 위원회 개최 주기는 어떠합니까?

- ① 매월 () ② 매분기 () ③ 매반기 () ④ 사안 발생시 () ⑤ 기타 ()

5) 현재까지 위원회는 몇 회 개최되었습니까? 시기를 구분하여 해당 부분에 V표 해주십시오.

구 분	①없음	②1~3회	③4~6회	④7~9회	⑤10회 이상
2007년 이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2. 기관심의위원회(IRB)

1) 설치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2007년 이전 () ② 2007년 () ③ 2008년 () ④ 2009년 ()
 ⑤ 2010년 () ⑥ 2011년 () ⑦ 2012년 ()

2) 위원회 구성 형태는 어떠합니까?

- ① 대학 내부 인사로만 구성 ()
 ② 대학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로 구성 ()
 ③ 기타 ()

3) 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연구계획서의 과학성과 윤리성 심의 및 승인 ()
 ②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동의서 및 동의 과정 심의 ()
 ③ 승인된 연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④ 기타 ()

4) 위원회 개최 주기는 어떠합니까?

- ① 매월 () ② 매분기 () ③ 매반기 () ④ 사안 발생시 () ⑤ 기타 ()

5) 현재까지 위원회는 몇 회 개최되었습니까? 시기를 구분하여 해당 부분에 V표 해주십시오.

구 분	①없음	②1~3회	③4~6회	④7~9회	⑤10회 이상
2007년 이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3. 연구윤리관련 위원회 미설치 기관

1) 귀 대학에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 2)번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② 아니오 () ➡ 4번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2) 향후 어떤 유형의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복수 응답가능)

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② 기관심의위원회(IRB) ()

4. 연구윤리 관련 부서에 관한 조사입니다(관련 부서란 대학 공식 조직에 포함되어 있으며, 1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TF팀도 관련 부서에 포함됩니다).

※ 연구윤리 관련 부서가 있는 경우 ➡ 4-1번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연구윤리 관련 부서가 없는 경우 ➡ 4-2번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4-1.

1) 이 부서는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① 2007년 이전 () ② 2007년 () ③ 2008년 () ④ 2009년 ()

⑤ 2010년 () ⑥ 2011년 () ⑦ 2012년 ()

2) 관련 부서의 구성 인원은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5명() ⑤ 6명 이상()

3) 관련 부서 담당자의 업무 분장은 어떠합니까?

① 연구윤리 업무만을 전담 () ② 다른 업무와 연구윤리 업무를 겸함 ()

4) 관련 부서 설치 단위는 무엇입니까?

① 대학 본부 () ② 단과 대학 () ③ 기타 ()

4-2. 귀 대학에 연구윤리 관련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5. 연구부정행위 처리에 대한 조사입니다.

5-1.

1) 귀 대학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처리한 횟수는 몇 회입니까?

구 분	①2007년 이전	②2007년	③2008년	④2009년	⑤2010년	⑥2011년	⑦2012년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 · 수 · 해양학							
예술 · 체육학							
기타							

2) 처리한 연구부정행위는 어떤 종류였습니까? 해당 부분에 횟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①2007 년 이전	②2007 년	③2008 년	④2009 년	④2010 년	④2011 년	④2012 년
연구 부정 행위	(1) 위조							
	(2) 변조							
	(3) 표절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5) 자료의 중복사용, 중복게재							
	(6) 논문대필							
(7)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시기와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십시오.								

3)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었을 때 제재의 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 부분에 V표를 해 주십시오.

구 분		①주의· 경고	②견책· 감봉	③정직	④해임· 파면	⑤학위 취소	⑥기타
연구 부정 행위	(1) 위조						
	(2) 변조						
	(3) 표절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5) 자료의 중복사용, 중복게재						
	(6) 논문 대필						
(7)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재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십시오.							

4) 귀 대학에는 논문 대필이 발견된 경우 지도 교수를 처벌할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① 예 () ➡ 6)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아니오 () ➡ 5)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귀 대학에서는 논문 대필이 발견될 경우 지도 교수를 처벌할 관련 규정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6) 논문 대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도 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귀 대학에서는 교수 1인당 지도 학생 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① 예 () ➡ 8)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아니오 () ➡ 7)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귀 대학에서는 교수 1인당 지도 학생 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8) 귀 대학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습니까?

① 2007년 이전 () ② 2007년 () ③ 2008년 () ④ 2009년 ()

⑤ 2010년 () ⑥ 2011년 () ⑦ 2012년 ()

2) 귀 대학은 다음의 구성원들에게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구 분	① 예	② 아니오
(1) 학부생		
(2)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3) 교원 및 전문 연구원		
(4) 연구담당 행정 실무자		

3) 귀 대학은 연구윤리교육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정규과목 () ② 특강 및 워크숍 () ③ 온라인(인터넷) 강의 ()

④ 기타(홍보자료 제작 배포 등) ()

4) 귀 대학은 연구윤리교육을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대학 내 관련 전문가 () ② 대학 내의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

③ 외부 전문가 () ④ 외부 전담기관(ex. 연구개발인력교육원)에 위탁 ()

6-2.

1) 귀 대학에서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육에 대한 필요성 없음 () ② 강사부족 () ③ 교재부족 ()

④ 예산부족 () ⑤ 기타 ()

2) 귀 대학에서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6-3.

1) 귀 대학에서는 학위 논문 제출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① 예 () ➡ 7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아니오 () ➡ 2)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대학에서는 학위 논문 제출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6-4.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은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각 기관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윤리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 대학에서는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을 통해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7. 연구윤리 활동 경비에 대한 조사입니다.

※ 연구윤리 활동경비가 있는 경우 ➡ 7-1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 활동경비가 없는 경우 ➡ 8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7-1.

1) 귀 대학에서는 연구윤리 활동 경비로 연간 얼마의 예산을 사용하십니까?

시 기	구 분	①없음	②1000만원 미만	③1,000~ 3,000만원 미만	④3,000~ 5,000만원 미만	⑤5,000만원 이상
2007년 이전	연구진실성 검증					
	연구윤리 교육					
2007년	연구진실성 검증					
	연구윤리 교육					
2008년	연구진실성 검증					
	연구윤리 교육					
2009년	연구진실성 검증					
	연구윤리 교육					
2010년	연구진실성 검증					
	연구윤리 교육					
2011년	연구진실성 검증					
	연구윤리 교육					
2012년	연구진실성 검증					
	연구윤리 교육					

2) 귀 대학에서는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예산을 어디서 지원받고 계십니까?

① 대학 본부 () ② 단과대학/대학원 () ③ 산학협력단 () ④ 정부 ()

3) 귀 대학에서는 연구윤리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어디서 지원받고 계십니까?

① 대학 본부 () ② 단과대학/대학원 () ③ 산학협력단 () ④ 정부 ()

8.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활동 및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8-1. 귀 대학의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① 매우 만족 한다	② 대체로 만족 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불만족 한다	⑤ 매우 불만족 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연구윤리 관련 제반 규정 확립					
연구윤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8-2. 지금까지 귀 대학이 수행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 중 우수 사례에 해당되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구 분	우 수 사례
(1)2007년 이전	
(2)2007년	
(3)2008년	
(4)2009년	
(5)2010년	
(6)2011년	
(7)2012년	

8-3.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활동이 없다면, 귀 대학은 연구윤리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향후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구 분	활동계획
(1) 연구윤리관련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2) 연구윤리 관련 제반 규정 확립	
(3) 연구윤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	
(4) 기타	

8-4. 귀 대학이 지금까지의 연구윤리 활동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저해 요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8-5. 귀 대학이 지금까지의 연구윤리 활동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8-6. 정부는 연구진실성 확립 및 선진형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귀 대학은 정부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펼친 다음의 노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불만족 한다	⑤ 매우 불만족 한다.
(1)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2011년 6월 개정) 및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권고문’ 제시, 학위논문 대필 근절 대책 수립(2010. 6. 28) 등					
(2) 각종 책자 발간을 통해 국내·외 연구윤리 활동 소개(연구윤리소개, 외국대학의 연구윤리 확립활동 사례 등)					
(3)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대학의 연구윤리 활동 지원(연구자 개인 및 학회 대상 GRP 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					
(4) 올바른 연구수행 논의를 위한 연구윤리 포럼(학술단체총연합회 주관) 및 전시회 개최					
(5) 연구윤리 정보센터 포털사이트 ‘좋은 연구’ 구축(2012년 3월 Center for Research Ethics로 개편) 및 다양한 정보 제공					
(6) 연구윤리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과제 추진(연구노트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논문 유사도 검색 시스템 시범 구축 등)					
(7) 연구윤리교육 전문가 양성 및 교육대상(교수, 연구기관, 대학원생)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윤리교육 실시					

2) 귀 대학은 정부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분야 중 어떤 부분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각종 책자 발간을 통해 국내·외 연구윤리활동 소개
 - ②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대학·학회·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활동 지원 사업
 - ③ 올바른 연구수행의 문화 정립을 위한 연구윤리 포럼 및 전시회 개최
 - ④ 대학 및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 협의체 운영
 - ⑤ 대학·학회·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⑥ 교육대상(교수, 연구기관, 대학원생)별 맞춤형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및 보급
 - ⑦ 기관 연구진실성 검증 실무(책임)자 협의체 운영
 - ⑧ 연구진실성 검증 실무(책임)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
 - ⑨ 연구윤리정보센터 포털 사이트 운영의 고도화
 - ⑩ 학계의 연구실적 평가 등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 ⑪ 대학원생 대상 연구윤리 과목 이수 의무화 또는 졸업을 위한 PF제 실시
 - ⑫ 표준화된 연구윤리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⑬ 연구윤리에 관한 국가적 정책조정기구(가칭 연구윤리정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 *연구윤리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 관련 제도 개선,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최종 심의, 연구윤리관련 제 상담 및 코디네이터 등
- ⑭ 해외 연구윤리 선진 기관과의 국제적 교류 협력 강화
 - ⑮ 기관 연구윤리 전담인력(박사급) 양성 및 운용을 위한 지원

3)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정부가 새롭게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4) 귀 대학이 지금까지의 연구윤리 활동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느꼈던 애로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바쁜 시간에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2012년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분석을 위한 설문지

2) 정부출연연구소

2012년 국내 연구윤리 활동 조사·분석을 위한 설문 안내

각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정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007. 2)과 “연구노트 관리 지침” (2007. 12)의 제정, 제1차 연구윤리확립 종합추진계획(2010-2012)의 수립과 실천, 연구윤리정보센터의 운영, 연구자 대상 연구윤리교육 실시 등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연구윤리 활동 지원 사업을 활발히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격년으로 대학 및 정부 출연(연)을 대상으로 연구윤리활동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활동에 관한 성과와 연구 현장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연구윤리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되는 정기 조사에서도 정확한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번거롭겠지만 귀 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 조사는 2012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 까지 2주 동안 실시되며, 웹상 (<http://agency.wsurvey.net/survey/answer.php?sidx=816>) 에서 진행됩니다. 질문 항목이 많으니 먼저 공문을 통해 보내드린 설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정확하고 충분히 확보한 후 설문제 빠짐없이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겠습니다.

본 실태 조사는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연구과제(연구책임자: 서울교육대학교 이인재 교수)의 일환으로 공동연구원인 연세대학교 이원용 교수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하는 중에 의문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공동연구원 이원용 (02-2123-2649, wylee@yonsei.ac.kr),

*연구조원 이상정 (02-2123-4277, rubisj0723@gmail.com)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2012년 8월

■ 정부출연(연) 일반 사항

1. 정부출연(연) 명 : ()

■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관련 실태 조사

1.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에 대한 조사입니다.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이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혹은 각 연구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제정한 연구윤리지침 등을 말합니다)

※ 연구윤리 관련 제반 규정·지침이 있는 경우 ➡ 1-1번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연구윤리 관련 제반 규정·지침이 없는 경우 ➡ 1-2번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1-1.

1)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의 제정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2007년 이전 () ② 2007년 () ③ 2008년 () ④ 2009년 ()
⑤ 2010년 () ⑥ 2011년 () ⑦ 2012년 ()

2) 정부는 2011년 6월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연구논문 작성 시 자신이 이전에 발표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사용하며, 이전 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하여 연구성과·업적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둘째,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명시하기 위해 검증시효기간 5년을 삭제하는 것과,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비율을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귀 정부출연(연)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귀 대학의 연구윤리관련 규정 지침을 개정하였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1-2.

1) 귀 정부출연(연)에서는 연구윤리 규정·지침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2. 연구노트 관련 규정에 대한 조사입니다.

2-1. 귀 정부출연(연)은 정부가 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 지침”(2007. 12)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침을 마련했습니까?

- ① 예 () ➡ 1)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아니오 () ➡ 2-2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규정·지침이 있다면 그 제정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2007년 이전 () ② 2007년 () ③ 2008년 () ④ 2009년 ()
⑤ 2010년 () ⑥ 2011년 () ⑦ 2012년 ()

2) 귀 정부출연(연)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규정·지침은 어떤 이유에서 제정되었습니까?(복수응답가능)

- 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
②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
③ 기타 ()

2-2. 귀 정부출연(연)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규정·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3.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에 대한 조사입니다.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란 연구의 윤리성을 제고하거나 심의하는 위원회

로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 형	기 능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연구의 부정행위와 부적절한 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 담당
기관심의위원회 (IRB)	인문·사회과학분야, 의·생명분야 등 전 학문 분야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관심의위원회 <예,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

※ 정부출연(연)에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3-1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IRB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3-2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 3-1, 3-2 질문에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출연(연)에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 3-3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1) 설치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2007년 이전 () ② 2007년 () ③ 2008년 () ④ 2009년 ()
)
 ⑤ 2010년 () ⑥ 2011년 () ⑦ 2012년 ()

2) 위원회 구성 형태는 어떠합니까?

- ① 정부출연(연) 내부 인사로만 구성 ()
 ② 정부출연(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로 구성 ()
 ③ 기타 ()

3) 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 ()
 ② 연구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 ()
 ③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 ()

④ 기타 ()

4) 위원회 개최 주기는 어떠합니까?

① 매월 () ② 매분기 () ③ 매반기 () ④ 사안 발생시 () ⑤ 기타 ()

5) 현재까지 위원회는 몇 회 개최되었습니까? 시기를 구분하여 해당 부분에 V표 해주십시오.

구 분	①없음	②1~3회	③4~6회	④7~9회	⑤10회 이상
2007년 이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2. 기관심의위원회(IRB)

1) 설치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2007년 이전 () ② 2007년 () ③ 2008년 () ④ 2009년 ()
 ⑤ 2010년 () ⑥ 2011년 () ⑦ 2012년 ()

2) 위원회 구성 형태는 어떠합니까?

- ① 정부출연(연) 내부 인사로만 구성 ()
 ② 정부출연(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로 구성 ()
 ③ 기타 ()

3) 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연구계획서의 과학성과 윤리성 심의 및 승인 ()
 ②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동의서 및 동의 과정 심의 ()
 ③ 승인된 연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④ 기타 ()

4) 위원회 개최 주기는 어떠합니까?

- ① 매월 () ② 매분기 () ③ 매반기 () ④ 사안 발생시 () ⑤ 기타 ()

5) 현재까지 위원회는 몇 회 개최되었습니까? 시기를 구분하여 해당 부분에 V표 해주십시오.

구 분	①없음	②1~3회	③4~6회	④7~9회	⑤10회 이상
2007년 이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3.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미설치 기관

1) 귀 정부출연(연)에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 2)번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② 아니오 () ➡ 4번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2) 향후 어떤 유형의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실 계획입니까?(복수 응답가능)

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② 기관심의위원회 IRB ()

4. 연구윤리 관련 부서에 관한 조사입니다(관련 부서란 정부출연(연) 공식 조직에 포함되어 있으며, 1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TF팀도 관련 부서에 포함됩니다).

※ 연구윤리 관련 부서가 있는 경우 ➡ 4-1번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연구윤리 관련 부서가 없는 경우 ➡ 4-2번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4-1.

1) 이 부서는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① 2007년 이전 () ② 2007년 () ③ 2008년 () ④ 2009년 ()

⑤ 2010년 () ⑥ 2011년 () ⑦ 2012년 ()

2) 관련 부서의 구성 인원은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5명() ⑤ 6명 이상()

3) 관련 부서 담당자의 업무 분장은 어떠합니까?

① 연구윤리 업무만을 전담 () ② 다른 업무와 연구윤리 업무를 겸함 ()

4-2. 귀 정부출연(연)에 연구윤리 관련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5. 연구부정행위 처리에 대한 조사입니다.

5-1. 현재까지 귀 정부출연(연)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처리한 횟수는 몇 회입니까?

구 분	①없음	②1~3회	③4~6회	④7~9회	⑤10회 이상
2007년 이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 처리한 연구부정행위는 어떤 종류였습니까? 해당 부분에 횟수를 표기해 주십시오.

구 분		①2007 년 이전	②2007년	③2008년	④2009년	④2010년	④2011년	④2012년
연구 부정 행위	(1) 위조							
	(2) 변조							
	(3) 표절							
	(4)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5) 자료의 중복 사용, 중복게 재							
	(6) 논문대필							
(7)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시기와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십시오.								

2)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었을 때 제재의 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부
분에 V표를 해 주십시오.

구 분		①주의· 경고	②견책· 감봉	③정직	④해임· 파면	⑤기타
연구 부정 행위	(1) 위조					
	(2) 변조					
	(3) 표절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5) 자료의 중복사용, 중복게재					
	(6) 논문 대필					
(7)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재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십시오.						

3) 귀 정부출연(연)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

① 예 () ➡ 5-2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귀 정부출연(연)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귀 정부출연(연)이 직면했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② 동료 연구자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한 심정적 부담과 많은 시간 소요를 이유로, 조사 위원이 되기를 기피하여 조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움

③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 판정 기준 자체가 상세화 되어 있지 않아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 판정이 어려움

④ 조사위원들 간의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 판정에 관한 의견 차가 심함

⑤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를 처리할 때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담당 주체를 분리하기 어려움

⑦ 기타()

※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 실시되는 경우 ➡ 6-1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 6-2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2 -

1) 귀 정부출연(연)에서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언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까?

- ① 2007년 이전 () ② 2007년 () ③ 2008년 () ④ 2009년 ()
 ⑤ 2010년 () ⑥ 2011년 () ⑦ 2012년 ()

2) 귀 정부출연(연)은 다음의 구성원들에게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구 분	① 예	② 아니오
(1) 전임 연구원		
(2) 비전임 연구원		
(3) 연구담당 행정 실무자		

3) 귀 정부출연(연)은 연구윤리교육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특강 및 워크숍 () ② 온라인(인터넷) 강의()
 ③ 기타(홍보자료 제작 배포 등) ()

4) 귀 정부출연(연)은 연구윤리교육을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정부출연(연) 내 관련 전문가 () ② 정부출연(연) 내의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
 ③ 외부 전문가 () ④ 외부 전담기관(예, 연구개발인력교육원 등)에 위탁 ()

6-2.

1) 귀 정부출연(연)에서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육에 대한 필요성 없음 () ② 강사부족 () ③ 교재부족 ()
 ④ 예산부족 () ⑤ 기타 ()

2) 귀 정부출연(연)에서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6-3. 연구개발인력교육원(KIRD)은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각 기관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는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을 통해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7. 연구윤리 활동 경비에 대한 조사입니다.

※ 연구윤리 활동경비가 있는 경우 ➡ 7-1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 활동경비가 없는 경우 ➡ 8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7-1.

1) 귀 정부출연(연)에서는 연구윤리 활동 경비로 연간 얼마의 예산을 사용하십니까?

시 기	구 분	①없음	②1000만원 미만	③1,000~ 3,000만원 미만	④3,000~ 5,000만원 미만	⑤5,000만원 이상
2007년 이전	연구진실성 검증					
	연구윤리 교육					
2007년	연구진실성 검증					
	연구윤리 교육					
2008년	연구진실성 검증					
	연구윤리 교육					
2009년	연구진실성 검증					
	연구윤리 교육					
2010년	연구진실성 검증					
	연구윤리 교육					
2011년	연구진실성 검증					
	연구윤리 교육					
2012년	연구진실성 검증					
	연구윤리 교육					

2) 귀 정부출연(연)에서는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예산을 어디서 지원받고 계십니까?

① 자체 재원 () ② 정부 () ③ 기타 ()

3) 귀 정부출연(연)에서는 연구윤리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어디서 지원받고 계십니까?

① 자체 재원 () ② 정부 () ③ 기타 ()

8.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활동 및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활동이 있는 경우 ➡ 8-1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활동이 없는 경우 ➡ 8-3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1. 귀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① 매우 만족 한다	② 대체로 만족 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불만족 한다	⑤ 매우 불만족 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연구윤리관련 제반 규정 확립					
연구윤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					

8-2. 지금까지 귀 정부출연(연)이 수행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 중 우수 사례에 해당되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구 분	우수사례
(1)2007년 이전	
(2)2007년	
(3)2008년	
(4)2009년	
(5)2010년	
(6)2011년	
(7)2012년	

8-3.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활동이 없다면 귀 정부출연(연)은 연구윤리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향후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구 분	활동 계획
(1)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조직 및 운영	
(2) 연구윤리 관련 제반 규정 확립	
(3) 연구윤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	
(4) 기타	

8-4. 귀 정부출연(연)이 지금까지의 연구윤리 활동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저해 요소가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8-5. 귀 정부출연(연)이 지금까지의 연구윤리 활동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슈)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8-6. 정부는 연구진실성 확립 및 선진형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귀 정부출연(연)은 정부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펼친 다음의 노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불만족 한다	⑤ 매우 불만족 한다.
(1)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2011년 6월 개정) 및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권고문’ 제시, 학위논문 대필 근절 대책 수립(2010. 6. 28) 등					
(2) 각종 책자 발간을 통해 국내·외 연구윤리 활동 소개(연구윤리소개, 외국대학의 연구윤리 확립활동 사례 등)					
(3)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대학의 연구윤리 활동 지원(연구자 개인 및 학회 대상 GRP 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					
(4) 올바른 연구수행 논의를 위한 연구윤리 포럼(학술단체총연합회 주관) 및 전시회 개최					
(5) 연구윤리 정보센터 포털사이트 ‘좋은 연구’ 구축(2012. 3 center for research ethics로 개편) 및 다양한 정보 제공					
(6) 연구윤리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과제 추진(연구노트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논문 유사도 검색 시스템 시범 구축 등)					
(7) 연구윤리교육 전문가 양성 및 교육대상(교수, 연구기관, 대학원생)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윤리교육 실시					

2) 귀 정부출연(연)은 정부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분야 중 어떤 부분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3가지를 선택해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각종 책자 발간을 통해 국내·외 연구윤리활동 소개②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대학·학회·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활동 지원 사업③ 올바른 연구수행의 문화 정립을 위한 연구윤리 포럼 및 전시회 개최④ 대학 및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 협의체 운영⑤ 대학·학회·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⑥ 교육대상(교수, 연구기관, 대학원생)별 맞춤형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및 보급⑦ 기관 연구진실성 검증 실무(책임)자 협의체 운영⑧ 연구진실성 검증 실무(책임)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⑨ 연구윤리정보센터 포털 사이트 운영의 고도화⑩ 학계의 연구실적 평가 등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⑪ 대학원생 대상 연구윤리 과목 이수 필수화 또는 졸업을 위한 PF제 실시⑫ 표준화된 연구윤리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⑬ 연구윤리에 관한 국가적 정책조정기구(가칭 *연구윤리정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연구윤리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 관련 제도 개선,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최종 심의, 연구윤리관련 제 상담 및 코디네이터 등⑭ 해외 연구윤리 선진 기관과의 국제적 교류 협력 강화⑮ 박사급 연구윤리 전담 인력 양성 및 운용을 위한 지원 |
|---|

3)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정부가 새롭게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4) 귀 정부출연(연)이 지금까지의 연구윤리 활동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느꼈던 애로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바쁜 시간에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2012년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분석을 위한 설문지

3) 일반연구자

2012년 국내 연구윤리 활동 조사·분석을 위한 설문 안내

각 대학의 연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정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007. 2)과 “연구노트 관리 지침” (2007. 12)의 제정, 제1차 연구윤리확립 종합추진계획(2010-2012)의 수립과 실천, 연구윤리정보센터의 운영, 연구자 대상 연구윤리교육 실시 등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연구윤리 활동 지원 사업을 활발히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격년으로 대학 및 정부 출연(연)을 대상으로 연구윤리활동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활동에 관한 성과와 연구 현장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연구윤리 정책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로이 일반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 조사는 2012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 까지 2주 동안 실시되며, 웹상 (<http://agency.wsurvey.net/survey/answer.php?sidx=817>) 에서 진행됩니다. 설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정확하고 충분히 확보한 후 설문에 빠짐없이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겠습니다.

본 실태 조사는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연구과제(연구책임자: 서울교육대학교 이인재 교수)의 일환으로 공동연구원인 연세대학교 이원용 교수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하는 중에 의문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공동연구원 이원용 (02-2123-2649, wylee@yonsei.ac.kr),

*연구조원 이상정 (02-2123-4277, rubisj0723@gmail.com)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2012년 8월

■ 일반연구자 일반 사항

1. 본 설문 조사에 응답하신 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 ① 교수 () ② 연구원 () ③ 대학원생 ()

2. 본 설문 조사에 응답하신 분의 전공 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인문·사회과학 () ② 이·공학 ()
③ 의·생명과학 () ④ 기타 ()

■ 일반연구자의 연구윤리 관련 실태 조사

1. 연구윤리 관련 지침과 규정 및 부서에 대한 인식 조사입니다.

1-1. 정부는 2007년 2월에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고, 2011년 6월에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지침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1-2. 연구윤리 지침 제 4조에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위·변조에 관한 이러한 정의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1-3. 연구윤리 지침 제 4조에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로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표절에 관한 이러한 정의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1-4. 연구윤리 지침 제 4조에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

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관한 이러한 정의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1-5. 연구윤리 지침 제 7조에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귀하는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에 관한 이러한 지침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1-6. 귀하는 귀하가 속한 기관에서 연구윤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또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1-7. 귀하는 귀 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제 분야에 대한 상담 지원 또는 코디네이터를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2. 연구노트 관련 규정에 대한 조사입니다.

2-1.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 지침”(2007. 12)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규정·지침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2-2. 귀하는 연구과정에서 연구노트를 직접 작성하거나 혹은 연구자에게 작성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3.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에 대한 조사입니다.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란 연구의 윤리성을 제고하거나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 형	기 능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연구의 부정행위와 부적절한 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 담당
기관심의위원회 (IRB)	인문·사회과학분야, 의·생명분야 등 전 학문 분야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관심의위원회 <예,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

3-1. 귀하는 귀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고 있습니까?

- ①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의 존재만 인지 () ② IRB 존재만 인지()
 ③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와 IRB 존재 모두 인지() ④ 모두 인지하지 못함()

2)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수행전후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IRB의 심의를 받으십니까?

- ① 예 () ➡ 4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아니오 () ➡ 3-1, 3)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해당사항 없음 () ➡ 4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함에도 IRB 심의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IRB에 대한 인식 부족 () ② 소속된 기관의 IRB부재 () ③ 심의 받을 필요성 없음 () ④ 예산부족 () ⑤ 기타 ()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입니다.

4-1. 귀하는 현재까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자료의 중복 사용 혹은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부적절) 행위를 직접 저질렀거나 혹은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 1)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아니오 () ➡ 4-2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부정(부적절) 행위를 직접 저질렀거나 혹은 목격한 경험이 있다면 그 부정행위는 어떤 종류였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위조 () ➡ 4-2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변조 () ➡ 4-2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표절 () ➡ 4-2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 2)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 자료의 중복 사용 혹은 중복게재 () ➡ 4-2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를 직접 저질렀거나 혹은 목격한 경험이 있다면, 그 부정행위는 어떤 종류였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저자로 등재 ()
- ② 연구에 상당한 참여를 한 자가 저자로 등재되지 못함 ()
- ③ 제 1저자의 자리가 부당하게 배정됨 ()

4-2.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를 위한 방법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4-3. 귀하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4-4. 귀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소속기관이 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 ② 소속기관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③ 신뢰하고 제보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 ④ 제보를 하더라도 개선될 여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 ⑤ 기타 ()

5. 연구윤리 관련 교육에 관한 조사입니다.

5-1. 귀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5-2. 귀하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 5-2, 1)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아니오 () ➡ 5-2, 6)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최근 3년간(2010. 1 - 2012. 8) 받은 연구윤리교육(연구노트 교육 포함)은 몇 번이었습니까?

- ① 1회() ② 2~3회 () ③ 4~6회 () ④ 7회 이상 ()
- ⑤ 일정 주기를 정해 지속적으로 받음 ()

2) 귀하가 받은 연구윤리교육은 어떤 형태였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정규 학과목 () ② 특강 및 워크숍()
- ③ 온라인(인터넷) 강의 () ④ 기타(홍보자료 제작 배포 등) ()

3) 귀하가 받은 연구윤리 관련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데이터의 획득 및 관리, 위조 및 변조
②	표절 및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③	바람직한 실험실 문화
④	인간 및 동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켜야 할 윤리(IRB 규정 포함)
⑤	연구노트
⑥	논문 작성법(인용법 포함) 및 논문 투고
⑦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4) 귀하는 이수한 연구윤리교육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 ➡ 5-2, 7)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대체로 만족 () ➡ 5-2, 7)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보통 () ➡ 5-2, 7)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④ 대체로 불만족 () ➡ 5-2, 5)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 매우 불만족 () ➡ 5-2, 5)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가 연구윤리 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강사의 전문성 부족 () ② 교육내용의 부실 ()
- ③ 교육내용이 특화되지 않아서 () ④ 교육환경의 열악 ()

6) 귀하가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 ② 소속된 기관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제공하지 않아서 ()
- ③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윤리교육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서 ()

7) 귀하는 향후 연구윤리 교육의 필수화(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 (1)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아니오 () ⇨ (3)번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윤리 교육의 필수화(의무화)는 언제부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등학교 () ② 중등학교 () ③ 대학교 () ④ 대학원 ()

(2) 위 (1)에서 ③과 ④에 답한 경우, 연구윤리교육을 필수화하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연구윤리 과목의 학점 이수 () ② 연구윤리 과목의 PF제 ()
- ③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이수 () ④ 지도교수의 확인서

()

(3) 연구윤리 교육의 필수화(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연구윤리교육을 필수로 할 만큼 중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으므로 ()

② 연구윤리교육의 효과가 미미할 것 같아서 ()

③ 연구윤리에 대한 것은 스스로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으므로 ()

④ 연구윤리교육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

⑤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적합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

8) 귀하는 석·박사과정의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6. 다음은 연구윤리정보센터(Center for Research Ethics, CRE)에 대한 물음입니다. 연구윤리정보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기관으로 연구윤리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 개발, 가공하여 책임있는 연구 수행과 바람직한 연구문화 정립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1. 귀하는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6-2. 귀하는 연구윤리정보센터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6-3. 귀하는 연구윤리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다음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올바른 연구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제시 ②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자료 제공 ③ 연구자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교류 ④ 연구윤리 동향 및 새로운 정보 제공

⑤ 연구윤리 관련 상담 및 자문 활동 ⑥ 연구윤리 관련 제 규정 및 정책 소개

6-4. 귀하는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 가장 보충해야 할 분야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연구윤리 관련 자료실 ② 지식 게시판 ③ 연구윤리교육 콘텐츠
④ 국내·외 소식 등 최신정보 ⑤ Q&A ⑥ 연구자 간 커뮤니티

7.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정부의 활동 및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7-1. 정부는 연구진실성 확립 및 선진형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 1) 귀하는 정부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펼친 다음의 노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불만족 한다	⑤ 매우 불만족 한다.
(1)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2011년 6월 개정) 및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권고문’ 제시, 학위논문 대필 근절 대책 수립(2010. 6. 28) 등					
(2) 각종 책자 발간을 통해 국내·외 연구윤리 활동 소개(연구윤리소개, 외국대학의 연구윤리 확립활동 사례 등)					
(3)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대학의 연구윤리 활동 지원(연구자 개인 및 학회 대상 GRP 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					
(4) 올바른 연구수행 논의를 위한 연구윤리 포럼(학술단체총연합회 주관) 및 전시회 개최					
(5) 연구윤리 정보센터 포털사이트 ‘좋은 연구’ 구축(2012. 3 center for research ethics로 개편) 및 다양한 정보 제공					
(6) 연구윤리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과제 추진(연구노트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논문 유사도 검색 시스템 시범 구축 등)					
(7) 연구윤리교육 전문가 양성 및 교육대상(교수, 연구기관, 대학원생)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윤리교육 실시					

2) 귀하는 정부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분야 중 어떤 부분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5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① 각종 책자 발간을 통해 국내·외 연구윤리활동 소개
- ②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대학·학회·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활동 지원 사업
- ③ 올바른 연구수행의 문화 정립을 위한 연구윤리 포럼 및 전시회 개최
- ④ 대학 및 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 협의체 운영
- ⑤ 대학·학회·정부출연(연)의 연구윤리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⑥ 교육대상(교수, 연구기관, 대학원생)별 맞춤형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및 보급
- ⑦ 기관 연구진실성 검증 실무(책임)자 협의체 운영
- ⑧ 연구진실성 검증 실무(책임)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
- ⑨ 연구윤리정보센터 포털 사이트 운영의 고도화
- ⑩ 학계의 연구실적 평가 등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 ⑪ 대학원생 대상 연구윤리 과목 이수 필수화 또는 졸업을 위한 PF제 실시
- ⑫ 표준화된 연구윤리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⑬ 석·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체계 확립
- ⑭ 해외 연구윤리 선진 기관과의 국제적 교류 협력 강화
- ⑮ 연구윤리 준수 시스템 확립(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3) 귀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국가적 정책조정기구(가칭 연구윤리정책연구원*)의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구윤리정책연구원의 역할: 연구윤리에 관한 종합적 정책 수립, 관련 제도 개선,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최종 심의, 연구윤리 관련 제 상담 및 코디네이터 등

- ① 별도의 독립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별도의 독립 기구의 설립은 아직 시기 상조라고 생각한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④ 한국연구재단 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⑤ 민간 학술단체 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⑥ 기타 ()

4) 귀하가 연구윤리에 관한 국가적 정책조정기구의 설립을 찬성하신다면, 해당 기관의 주요기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5가지를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종합적 정책 수립
- ② 바람직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윤리 관련 제도와 규정의 마련 및 개선
- ③ 각 연구기관이 요청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최종적 심의 및 판단
- ④ 대학, 정부출연(연) 등 연구기관의 연구윤리준수 여부 평가
- ⑤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⑥ 연구윤리 전문가 양성 및 지원
- ⑦ 연구윤리 관련 제 상담 및 코디네이터 지원
- ⑧ 해외 연구윤리 선진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윤리의

확립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5) 세계적 수준의 연구윤리 확립과 저변 확대를 위해 기관 내부에 연구윤리 전담 인력(박사급) 양성 및 운용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매우 필요하지 않다.

6) 위의 5)번 물음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하신 경우, 그 효과적인 추진 방향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7) 귀하는 향후 연구윤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새롭게 추진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바쁜 시간에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